

2022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차례



I. 매뉴얼 개요	04
1. 매뉴얼의 목적	04
2. 매뉴얼의 법적 근거	04
3. 용어 정의	04
4.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 방법	06
II. 2022학년도 주요 개정사항	07
III. 외국 국적 학생 입학·취학·편입학 안내	08
1. 외국 국적 학생 학력인정 원칙	08
2. 학력증빙서류에 근거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11
3.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19
IV. 외국 국적 학생의 학적관리 요령	20
1. 초등학교	20
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20
나. 학기 중에 들어온 경우	26
다. 학교를 중단한 경우	30
라. 초등학교 중단 후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온 경우	34
2. 중학교	40
가. 중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40
나. 학기 중에 들어온 경우	47
다. 학교를 중단한 경우	51
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중단 후 다시 중학교로 들어온 경우	56
3. 고등학교	67
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67
나. 학기 중에 들어온 경우	74
다. 학교를 중단한 경우	79
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단 후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온 경우	84
4. 한국어학급에 학생을 위탁한 경우(위탁학생 관리)	96
가. 위탁학생 나이스 관리 개요	97
나. 위탁학생 관리	98
V.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 관련 FAQ	106
VI. 부록	112
1. 학적처리 용어	112
2.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개요	115
3. 외국 국적 학생 학적처리 관련 근거 법령	116

I

매뉴얼 개요



1. 매뉴얼의 목적

본 2022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취학 또는 편입학하는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외국인 학생¹⁾의 효율적인 학적관리를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2. 매뉴얼의 법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30조의4, 제30조의5, 제30조의6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58호, 2022.2.14.)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2022.3.1.)
 - 2022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 ※ 위에서 제시된 근거가 개정되었을 경우 그에 따름.

3. 용어 정의

■ 다문화학생 유형(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및 정책 용어)

국제결혼 가정	국내출생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은 없으나, 학습에 필요한 문장이나 어휘를 이해하는 데 곤란을 겪는 경우 존재 •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불편함을 느끼며, 심리정서 지원 요구
	중도 입국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 새로운 가족과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정체성 혼란이나 무기력 등을 경험하는 경우 존재 •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공교육 진입과 적응에 어려움 발생
외국인 가정	외국인 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한국계 중국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 정주여건이 불안정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존재 ※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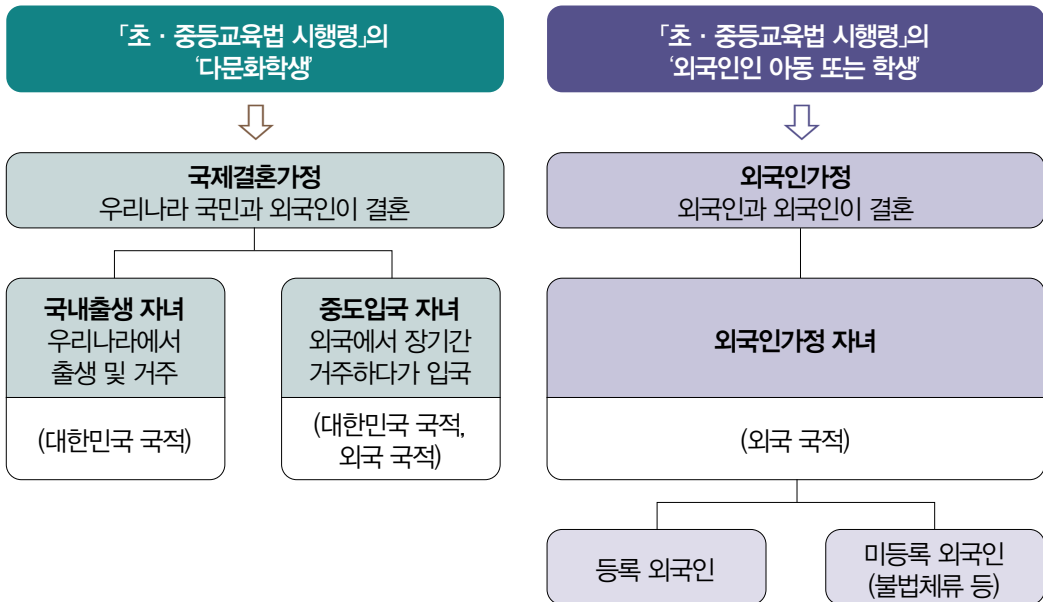
[출처] 2022 다문화교육 지원계획(교육부)

1) 복수국적자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적용함(「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용어 정리

- **다문화학생(제19조, 제75조, 제98조의2)**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
 -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외국인 학생(제19조, 제75조, 제98조의2)**
 - ※ 입학전형 등과 관련한 외국인 학생의 기준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 난민, 무연고, 미등록 이주아동 등을 포함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인 아동이나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정책 용어로서의 '다문화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다문화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 ※ 본 매뉴얼에서는 정책 용어를 따름.

■ (참고) 정책 용어와 법령상 용어의 관계



※ 외국 국적인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법령상 '다문화학생'과 '외국인 학생'에 모두 포함됨.

4. 매뉴얼의 구성 및 활용 방법

- 본 매뉴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Ⅰ. 매뉴얼 개요」는 본 매뉴얼의 목적과 법적 근거, 용어 정의, 구성 및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두 번째, 「Ⅱ. 2022학년도 주요 개정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변경에 따른 귀국학생 등의 학적처리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Ⅲ. 외국 국적 학생 입학·취학·편입학 안내」는 외국 국적 학생의 입학·취학·편입학 절차, 학력인정 원칙 및 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Ⅳ. 외국 국적 학생의 학적관리 요령」은 외국 국적 학생이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취학·편입학한 경우 학적처리 방법과 교육정보시스템(이하 나이스) 처리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 외국 국적 학생의 다양한 학적변동에 따른 학적처리 방법과 나이스 활용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는 예시에 따라 입교(입급)²⁾하는 외국 국적 학생의 학적과 나이스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Ⅴ.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 관련 FAQ」는 외국 국적 학생의 학적처리와 관련된 잦은 질의를 Q&A 형태로 재구성하여 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Ⅵ. 부록」은 외국 국적 학생의 학적처리 시에 필요한 내용으로 학적처리 용어와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외국 국적 학생 학적처리와 관련된 근거 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지 않은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지침과 해당 학교의 각종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업무담당은 나이스에서 제공하는 ‘공통’ 사용자그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학교별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나이스의 메뉴는 업무담당자의 권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본 매뉴얼에서 ‘입교’ 또는 ‘입급’은 학교에 들어오게 됨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방법은 입학, 취학, 편입학, 재입학 등으로 다양함.

II 2022학년도 주요 개정사항



□ 다문화학생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p>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p> <p>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p> <p>2.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p> <p><신 설></p>	<p>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① ----- 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p> <p>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p> <p>2. -----</p> <p>----- 학생(다문화학생은 제외한다)</p> <p>② 제19조제1항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p>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변경사항

※ 「2022학년도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근거

2021학년도	2022학년도
<p style="color: #00a68f;"><인적·학적사항 기재요령></p> <p>[초등학교·중학교]</p> <p>4)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명과 수학 기간은 입력할 수 있다.</p> <p>[고등학교]</p> <p>4)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의 학교급과 수학기간은 입력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학교명 미기재) 미국 ○○ High School 재학 → 미국 고등학교 재학</p>	<p style="color: #00a68f;"><인적·학적사항 기재요령></p> <p>4)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p> <p>(참고사항) 이전학년도에 기재된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의 학교명(급)과 수학기간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둬.</p>



III

외국 국적 학생 입학·취학·편입학 안내



1. 외국 국적 학생 학력인정 원칙

가. 기본 원칙

1) 학령기 아동에게 출신과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함.

※ 학령기 아동은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을 지칭함.

<관련 법령>

• 「헌법」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³⁾ 제28조

-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학교에서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의무교육(9년)을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보장함.

-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음.

3) 우리나라 발효일: 1991년 12월 20일(조약 제1072호)

2) 학령기 아동에게 한국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기회를 보장함.

<관련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 「난민법」 제33조(교육의 보장)

–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다문화학생이 한국어능력 및 한국문화 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맞춤형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방법

- 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학력증빙서류에 근거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시도교육청 학력심사위원회 또는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심의를 통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와 제98조의3)

다. 다문화학생의 입교⁴⁾ 흐름도

입교신청/ 입교대상 확인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외국 국적 학생			국내출생 자녀 등 한국 국적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⁵⁾			고등학교
		학교군 ⁶⁾ 지역	중학구 ⁷⁾ 지역		
	거주자가 속하는 학구 내의 초등학교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거주지가 속하는 중학구 내의 중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확인 서류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					
서류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 -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대상 확인(외국 소재 정규학교 확인) · 학년결정에 필요한 서류 확인: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학년결정	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증빙서류에 의해 학년결정 - 외국학교 재학기간과 이수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년)에 맞춰 계산 		학력심의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교육감 지정)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					
학적처리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적 용어 결정: 취학(초·중학교), 입학, 편입학, 재입학(고등학교) 등 - 입교 시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으로 내부결재 - 나이스 학적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성명: 여권(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등) 기준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앞 7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3000000(남) 또는 4000000(여) 				

4) 본 매뉴얼에서 '입교' 또는 '입급' 은 학교에 들어오게 됨을 나타내는 용어이며, 방법은 입학, 취학, 편입학, 재입학 등 다양함.

5) 중학교 배정, 전·편입학 세부사항은 교육지원청별 중학교 배정 지침에 따름.

6)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7)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2. 학력증빙서류에 근거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1)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함.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학기단위)을 기준으로 인정함.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함.

-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1 ~ 6학년 과정
-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7 ~ 9학년 과정
-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 외국학교에서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국내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취학 또는 편입학 등 중도 입급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예: 9월에 1학년 신입학)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가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함.**
 - ※ 초·중학교의 경우 외국인 학생인 경우에 한함.
 - ※ 외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공백 없이 연속하여 취학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예시) 2016년 9월 외국 소재 초등학교 **1학년 신입학** → 2022년 8월 외국학교 12학기 이수

→ **이수한 당해(2022년 9월)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취학 가능

- ▶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 취학을 위해서는 외국학교에서 13학기까지 이수하여야 하나, 외국학교가 1학년 신입학을 9월에 실시하여 학제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한 학기가 부족하더라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국내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취학이 가능함.

단, 12학기를 이수 후 연속하여 국내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 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함.**
 -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함.

2) 외국 학력인정학교 확인 방법

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메인화면→[정책]-[초·중·고 교육] 메뉴에서 확인함.
[문서명: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 학교) 목록 안내]
-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교육부, 학교정책과-4982(2014.8.22.)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학교에 재학하였던 학생의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갈음할 수 있음.**

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 대상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 받음.**
-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공문서로서의 효력 인정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문서발행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1965. 1. 24. 발효 (우리나라는 2007. 7. 14. 발효)

* 외교부 아포스티유(<https://www.apostille.go.kr>) 메인화면→[발급 서비스 바로가기]→[서비스 안내]-[아포스티유 제도 소개]에서 '가입국 현황' 확인 가능함.

■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임.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상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임.

-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에서 발행하는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위해 각각 자국내에 권한기관을 지정하여 동 확인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외교부는 해당 외국 협약가입국 발행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발급을 할 수 없음.
- ※ 또한, 협약 가입국이 자국 발행문서에 대해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자국 공관에게 아포스티유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례가 없으므로, 대상문서의 아포스티유는 해당 외국 정부에서 지정한 권한기관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함.

다)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 대상
- 서류 발행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가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가 발행한 문서임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받음.

*** 학력(교육과정) 인정 확인서 등**

※ 영사확인: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함.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문서접수국)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음.

라) 위의 가),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소재국의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임을 소명하여야 함(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 등).

<제출 시 주의사항>

-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해당 학교장의 직인,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 한글이나 영문 이외 언어로 작성된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공증이 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 영문 또는 한글 번역본이 첨부되지 않은 외국 공문서는 우리나라의 관계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문 또는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소재국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입교가 취소됨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3) 취학(입학) 또는 편입학 제출 서류

가) 취학(입학) 또는 편입학 신청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학교급에 따른 취학(입학) 또는 편입학 신청

학교급	신청하는 곳	
초등학교	거주지가 속하는 학교 내의 초등학교의 장에게 취학(입학) 또는 편입학 신청	
중학교	학교군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취학(입학) 또는 편입학 신청
	중학구 [※]	거주지가 속하는 중학구 내의 중학교의 장에게 취학(입학) 또는 편입학 신청(2020.8.15.부터 적용).
고등학교	입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편입학 신청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함.

8)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설정된 구역

나) 취학(입학) 또는 편입학 제출 서류

(1)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

(2)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서류 제출 없이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 (www.share.go.kr)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함.

(3) 성적증명서

(4)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해당자)

* 학교장의 서명(날인)이 있으면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학생의 국내 이전 학교 여부를 확인하여 이전 학교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요청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해당자)

※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7)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의 서류 확인 필요)

(8) 이 외에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정보 확인을 위해 학교에 따라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학교의 발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아포스티유 협약국)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요함.

※ 교육부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2014.8.22.)에 따라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교육부(www.moe.go.kr) 메인화면→[정책]-[초·중·고 교육] 메뉴에 해당 학교목록 게시)에서 재학한 경우,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절차를 생각하고 학교장 발급서류만으로 같음함.

※ 교육부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 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서류를 확인함.

4) 학년결정의 원칙

가) 학년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 (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학기)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중복수료 제외)로 인한 수학기간이나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나) 학년결정은 학생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되, 본인이 낮은 학년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력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함.**

※ 다문화학생이 추후 체육특기자, 전문선수 등 학생선수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대회 규정 및 종목별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학제와 연령차이가 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학년결정을 함.

다)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입국 후 국내 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학년 배정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취학 또는 편입학 등 중도 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예: 9월에 1학년 신입학)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가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함.

※ 초·중학교의 경우 외국인에 한하며, 외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 공백 없이 연속하여 취학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라)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함.

마)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바)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1)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 국 학 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함.

※ (예시) 일본 초등학교에서 2년 수학하고 베트남 초등학교(5년제)에서 3년 수학 후 초등학교를 최종 수료한 경우, 우리나라 중학교에 1학년에 입학 가능함.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 국 학 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취학(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함.

※ (예시) 베트남에서 초등학교(5년)와 이탈리아에서 중학교(이탈리아에서만 3년 수학)를 수료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 가능함.

3)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 국 학 제	12	5-3-4-4제				5년			3년			4년			4년		
	13	6-4-3-3제				6년			4년			3년			3년		
	11	6-3-2-5제				6년			3년			2년*		5년			
	13	2-4-3-4-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4-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함.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4) 기타

-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3.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 학력인정과 학년결정

■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와 제98조의3

■ 대상

-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

■ 방법

- 교육감은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
-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인 학교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게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

※ 학력심의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IV

외국 국적 학생의 학적관리 요령



1. 초등학교

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1) 학적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의 입학(신입학)과 동일하게 처리함.**
-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학생임.
- **사용되는 학적용어: 입학**
- 입학 시기: 1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이 남은 시점(당해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1학년으로 처음 입급하는 경우 '입학'으로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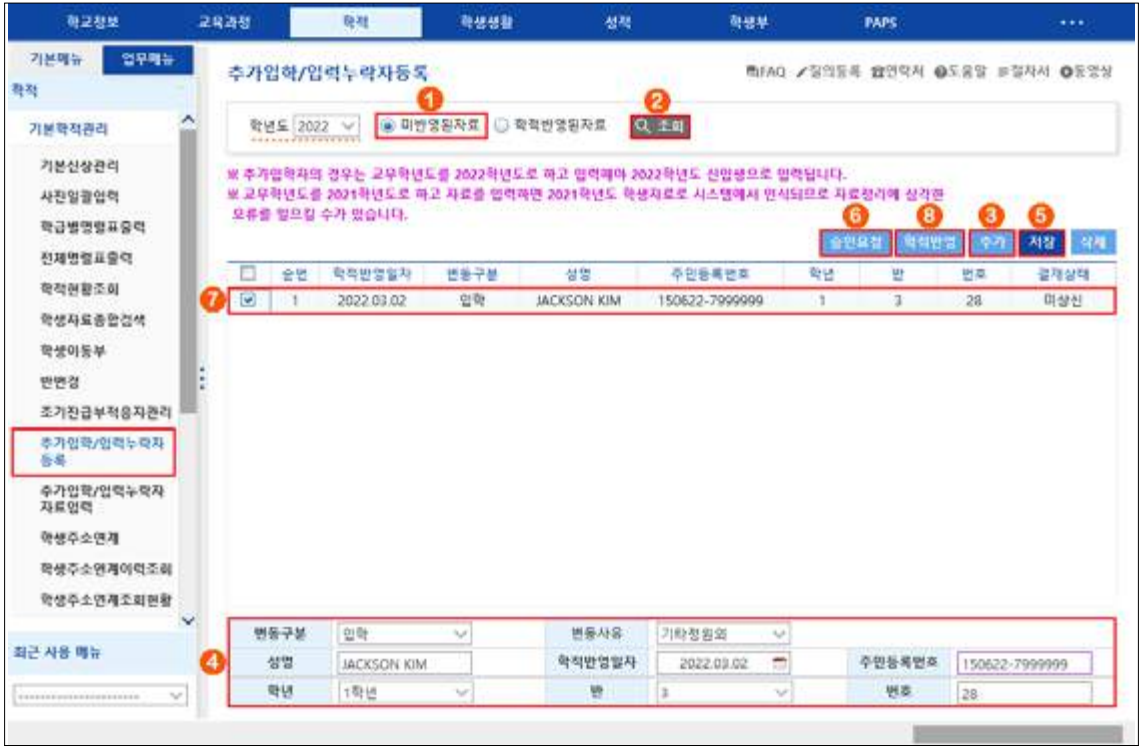
2) 나이스 처리 방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학생

■ 외국 국적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오는 경우 취학 대상자 명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입학생을 등록하여 학적을 생성한 후 [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추가 자료를 입력함.

※ 전체 신입생 학적생성 이전에는 [입학]-[취학관리]-[취학대상자관리]에서 입력하여 다른 신입생과 함께 학적을 생성하고 입학처리 후 추가 자료를 입력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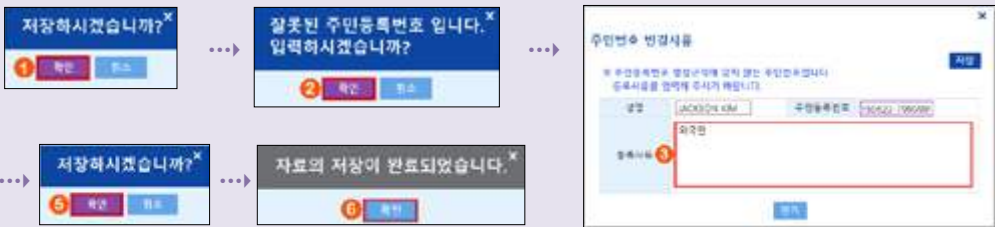
<1단계> 입학생 등록하기



- ① ~ ②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미반영일자' 선택하여 {조회}함.
- ③ ~ ⑤ {추가}를 클릭하여 하단의 내용인 '변동구분(입학)', '변동사유(기타정원외)' 선택, '학적반영일자(2022.03.02)', '주민등록번호(150622-7999999)', '성명(JACKSON KIM)' 입력, '학년(1학년)', '반(3)' 선택, '번호(28)' 확인 (번호는 해당 반의 마지막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됨) 후 {저장}함.
- ⑥ ~ ⑧ {승인요청}을 클릭하여 '기안문서상신' 창에서 '제목(추가입학/입력누락자) 확인, {결재자지정}, '내용(외국 국적 학생(JACKSON KIM)의 입학 관련 학적자료입니다.)' 입력, 해당학생(JACKSON KIM) 선택 후 {상신}하여 기안문 상신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학생(JACKSON KIM)을 선택하여 {학적반영}함.

 더 알아보기

- {저장} 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됨.
 - ※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입력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을 클릭한 후, ‘주민번호 변경사유’의 ‘등록사유’ 란에 ‘외국인’을 입력하고 {저장}함.



- 기안문 상신 과정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되며, 이후 나이스에서 기안문 상신과정은 동일한 과정을 거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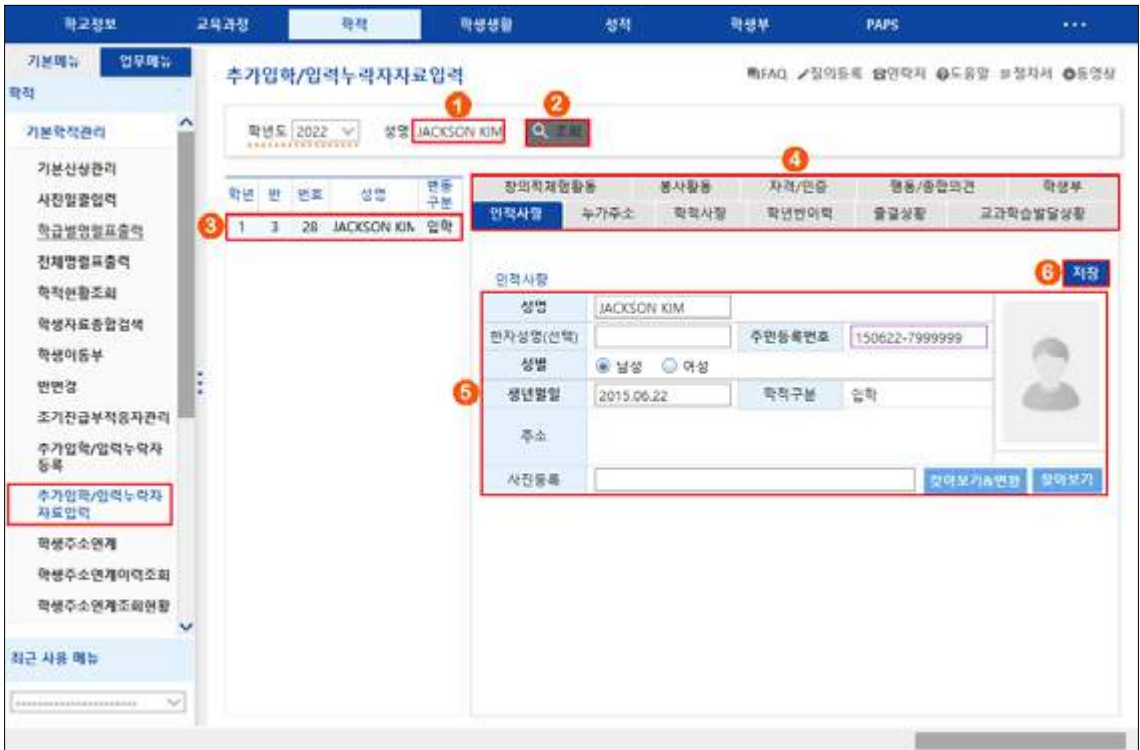
선택	결재 순번	구분	직위구분	ID	성명	직위	소속
<input type="checkbox"/>	1	가연	t	김	교사(초등)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2	결재	d	윤	교사(초등)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3	결재	a	안	교감(초등)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4	결재	s	송	교장(초등)	초등학교	

- 1 ~ 3 '기안문서상신' 창에서 '학교급(초등학교)', '문서종류선택(교무업무, 추가입학/입학능력자)' 확인 후, '제목(추가입학/입학능력자)'을 확인하고 {결재자지정}으로 결재자를 등록함.
- 4 ~ 6 '내용(외국 국적 학생(JACKSON KIM)의 입학 관련 학적자료입니다.)'을 입력한 후 해당학생을 선택하여 {상신}함.

-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학적반영}을 클릭함. “학적반영 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을 클릭하고, 이후 나타나는 “학적반영 처리 되었으며, 학생부에 반영되었습니다.” 창에서 {확인}을 클릭함.



<2단계> 추가 자료 입력하기



- ① ~ ②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성명(JACKSON KIM)' 입력하고 {조회}함.
- ③ ~ ⑥ 해당학생(JACKSON KIM) 선택 후 {인적사항} 탭 등에서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함.



더 알아보기

- 입학생에 대해서는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의 {기본신상}, {누가주소} 탭에서 학생의 기본신상 자료(사진 등)를 등록할 수 있음.

- 전체 신입생 학적생성 이전의 경우는 [입학]-[취학관리]-[취학대상자관리]에서 입력하여 다른 신입생과 함께 학적을 생성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관련 메뉴: [입학]-[취학관리]-[취학대상자관리], [학적일괄생성], [취학이동현황조회]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국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JOOO OO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15OOOO-7OOOOOO 주소 : OO도 OO시 OO구 OO길 123
학적사항	2022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들어오는 경우만 '입학'으로 처리가 가능함.

<외국 국적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입력 유의사항>

-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함.
 -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성별은 '남' 또는 '여'로 구분하여 입력함.
 - 복수국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적용하여 입력함.
-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 된 외국국적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함.
 -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함.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 따라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으로 하고,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입력하며 동성 쌍둥이일 경우 끝자리에 1:2를 부여함.
 - 예1) 남학생의 경우: 030521-3000000
 - 예2) 여학생의 경우: 040809-4000000
 - 예3) 동성 쌍둥이인 경우: 050315-3000001, 050315-3000002

<외국 국적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함.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나이스의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처리함.
 -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 ※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기재 경로>

- 신입생의 학생정보(성명 제외) 수정: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 재학생: 나이스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
- 학업중단학생: 나이스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이름으로조회}-{학생찾기}
- ※ 신입생이 입학 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개명을 제외한 학생정보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학적반영 취소 후 수정
- 졸업생: 나이스의 [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 보존시스템으로 자료가 이관된 졸업생: 나이스의 [학생부보존]-[학생부보존(초)/학생부보존(특)]-[학생부정정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나. 학기 중에 들어온 경우

1) 학적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학기 중 입급하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함.
- 사용되는 학적용어: 취학

2) 나이스 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학기 중에 들어온 경우, 국내에 '취학' 이전의 자료가 없으므로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취학'으로 등록하여 학적을 생성한 후 [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추가 자료를 입력함.
- ※ '취학' 이전의 내용은 공란으로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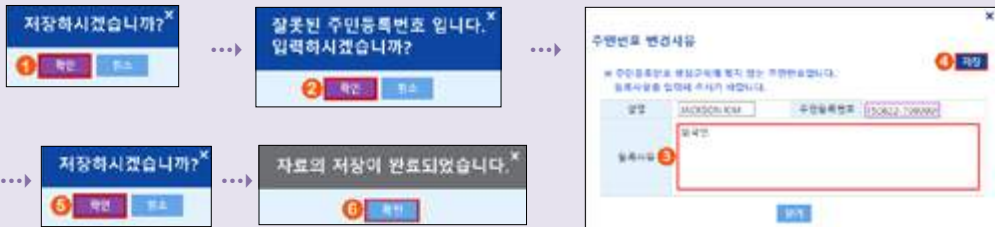
<1단계> 등록하기

The screenshot shows the NIS interface for adding a student record. The search bar at the top has '학년도 2022' and '미반영된자료' selected.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buttons for '승인요청', '학적반영', '추가', '저장', and '삭제'. A table lists student records, with one record for JACKSON KIM highlighted. Below the table, a form for adding a record is shown with fields for '변동구분' (취학), '변동사유' (선택), '성명' (JACKSON KIM), '학적반영일자' (2022.06.29), '주민등록번호' (150622-7999999), '학년' (1학년), and '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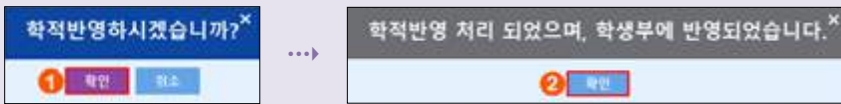
- ① ~ ③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미반영된자료' 선택하고 {조회}하여 {추가}함.
- ④ ~ ⑤ 각종 사항(변동구분(취학), 변동사유(선택), 성명(JACKSON KIM), 학적반영일자(2022.06.29), 주민등록번호(150622-7999999), 학년(1학년), 반(3), 번호(29))를 입력하여 {저장}함.
- ⑥ ~ ⑧ {승인요청}을 클릭하여 '기안문서상신' 창에서 '제목(추가입학/입력누락자) 확인, {결재자지정}, '내용(외국 국적 학생(JACKSON KIM)의 취학 관련 학적자료입니다.)' 입력, 해당학생(JACKSON KIM) 선택 후 {상신}하여 기안문 상신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학생(JACKSON KIM)을 선택하여 {학적반영}함.

더 알아보기

- {저장} 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됨.
 - ※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입력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을 클릭한 후, ‘주민번호 변경사유’의 ‘등록사유’ 란에 ‘외국인’을 입력하고 {저장}함.



- {학적반영}시 “학적반영하시겠습니까?” 창에서 ❶{확인}을 클릭하면 학적반영되며, 학교생활기록부가 생성됨.



<2단계> 추가 자료 입력하기

- ❶ ~ ❷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료입력]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성명(JACKSONKIM)’ 입력하여 {조회}함.
- ❸ ~ ❹ 해당학생(JACKSON KIM) 선택 후 {인적사항}, {누가주소}, {학적사항}, {학년반이력}, {출결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창의적체험활동}, {봉사활동}, {자격/인증}, {행동/종합의견}, {학생부} 탭에서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함.

I. 매뉴얼 개요
II. 2022학년도 주요 개정사항
III. 외국 국적 학생 입학·취학·편입학 안내
IV. 외국 국적 학생의 학적관리 요령
V.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 관련 FAQ
VI. 부록



더 알아보기

- 취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의 {기본신상}, {누가주소} 탭에서 학생의 기본신상 자료를 등록할 수 있음.

- ① '학년도(2022)', '학년(1)', '반(3)' 확인 후 {조회}함.
- ②~⑤ 해당학생(JACKSON KIM)을 선택한 후 기본신상, 누가주소 등을 입력하고 저장함.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중국 ○○○○학교(우리나라 초등학교급) 재학 → 국내 초등학교 2학년에 취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B○○○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14○○○○-7○○○○○○ 주소 : ○○도 ○○시 ○○구 ○○길 53
학적사항	2022년 09월 05일 □□초등학교 제2학년 취학
특기사항	

■ 학력심의를 통해 국내 초등학교 2학년으로 들어온 경우

- 시도교육청의 학력심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를 통해 들어온 경우

학생정보	성명 : K○○○ ○○ 성별 : 여 주민등록번호 : 14○○○○-8○○○○○○ 주소 : ○○도 ○○시 ○○구 ○○로 28
학적사항	2022년 09월 05일 □□초등학교 제2학년 취학
특기사항	○○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취학 이전 학력 인정

- 학교의 학력심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를 통해 들어온 경우

학생정보	성명 : M○○○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14○○○○-7○○○○○○ 주소 : ○○도 ○○시 ○○구 ○○로 73
학적사항	2022년 09월 05일 □□초등학교 제2학년 취학
특기사항	○○초등학교의 학력심의를 통해 취학 이전 학력 인정

<외국 국적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입력 유의사항>

-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함.

-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성별은 '남' 또는 '여'로 구분하여 입력함.
- 복수국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적용하여 입력함.

-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 된 외국국적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함.

-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함.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 따라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으로 하고,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입력하며 동성 쌍둥이일 경우 끝자리에 1·2를 부여함.

예1) 남학생의 경우: 100521-3000000

예2) 여학생의 경우: 101103-4000000

예3) 동성 쌍둥이인 경우: 120315-3000001, 120315-3000002

<외국 국적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 신입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함.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나이스의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처리함.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기재 경로>

• 신입생의 학생정보(성명 제외) 수정: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 재학생: 나이스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

• 학업중단학생: 나이스의[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이름으로조회}-{학생찾기}

※ 신입생이 입학 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개명을 제외한 학생정보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학적반영 취소 후 수정

• 졸업생: 나이스의 [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 보존시스템으로 자료가 이관된 졸업생: 나이스의 [학생부보존]-[학생부보존(초)/학생부보존(특)]-[학생부정정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다. 학교를 중단한 경우

1) 학적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면제'로 처리함.

- 외국 국적 학생이 미인정결석 등으로 인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하여 해당 학년 수료기준 수업일수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장 결정으로 '면제' 처리할 수 있음.

※ 면제 처리하는 경우 '정원외 관리'를 하지 않음.

※ 외국 국적 학생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사용되는 학적용어: 면제

2) 나이스 처리 방법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 ① ~ ③ [학적]-[유예/면제관리]-[유예/면제등록]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기간(2022.03.01~2022.06.30)' 설정하고 '미반영된자료' 선택하여 {조회}함.
- ④ ~ ⑦ {추가}를 클릭하여 하단의 '유예/면제 등록'에서 내용('변동일자 2022.06.14. '), '변동구분(면제)' 선택, {학생찾기}로 '성명(JACKSON KIM)' 입력 후 검색된 목록에서 더블클릭('학년(1학년), '반(3), '번호(28)' 가 자동으로 입력됨), '변동사유(기타)' 선택, '비고(기타(본국 귀국으로 인한 면제))' 입력, '학적 특기사항 (2022.06.14. 본국 귀국으로 인한 면제)' 입력 후 {저장}함.
 ※ 변동일자는 면제일로 함.
- ⑧ ~ ⑨ 목록을 클릭하여 오른쪽 하단의 {기본학적}, {학생생활}, {성적},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내역}, {PAPS}, {국가학업성취도}, {학부모서비스 신청내역}, {정정대장}, {학교스포츠클럽 누가기록}, {개별화 교육계획}에서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학급담임교사(업무담당교사)가 해당 메뉴에서 입력함.
- ⑩ {학교생활기록부생성}을 클릭하여 '학교생활기록부생성' 창에서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생활 기록부생성}을 클릭함.
- ⑪ ~ ⑬ {승인요청}을 클릭하여 '기안문서상신' 창에서 '제목(유예/면제) 확인, {결재자지정}, '내용(외국 국적 학생 (JACKSON KIM)의 면제처리 학적자료입니다.)' 입력, 해당학생(JACKSON KIM) 선택 후 {상신} 하여 기안문 상신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학생(JACKSON KIM)을 선택하여 {학적반영}함.



더 알아보기

- ⑩ {학교생활기록부생성}을 클릭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에 학적변동 내역이 등록되며, '출결상황'에 학적반영일자를 기준으로 수업일수와 출결통계가 등록됨.

- 학교생활기록부 생성을 완료한 후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완료함.

- ① ~ ② 결재자를 지정한 후, 내용 ('외국 국적 학생(JACKSON KIM)의 면제처리 학적자료입니다.')
- ③ ~ ④ 해당학생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한 후 {상신} 버튼을 클릭함.

- 외국 국적 학생은 [정원외관리(검정고시용)]에 등록하지 않음.
- 면제 등의 학업을 중단한 자가 재취학 등으로 학적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I)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II)를 교육부훈령 제18조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함.

■ **학급담임교사(업무담당교사)는 면제 처리 전 면제일자까지 학교생활기록부를 생성함.**

- 학생이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자료(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와 학교생활기록부는 나이스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함.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학급담임교사(업무담당교사)는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자료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입력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완료함.

- 1) 인적·학적 특기사항 입력(학적변동의 사유 입력)
- 2) 출결상황 입력
- 3)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누가기록, 특기사항 입력
- 4)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정규교육과정외의 학교스포츠클럽)의 클럽명(시간) 입력
- 5) 봉사활동 누가기록 입력
- 6) 본교에서 재학 중 발생한 내용을 기록하였는지 확인하여 미기재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입력
- 7) 평가 관련 내용 입력 여부 확인
- 8)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반영 및 최종 입력 확인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국내 초등학교 입학 → 학교생활부적응으로 미인정결석하여 2학년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A○○○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14○○○○-7○○○○○○ 주소 : ○○도 ○○시 ○○구 ○○길 48
학적사항	2021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6월 13일 면제)
특기사항	2022.06.13. 장기결석으로 인한 면제

■ **중국 ○○○○학교(우리나라 초등학교급) 재학 → 국내 초등학교 4학년에 취학 → 본국 귀국으로 인해 5학년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E○○○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11○○○○-7○○○○○○ 주소 : ○○도 ○○시 ○○구 ○○로 68
학적사항	2021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4학년 취학(2022년 06월 17일 면제)
특기사항	20○○.○○.○○.-20○○.○○.○○. 중국 ○○○○학교 재학 2022.06.17 본국 귀국으로 인한 면제

라. 초등학교 중단 후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온 경우

1) 학적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온 경우, **편입학**으로 처리함.
- 사용되는 학적용어: 편입학

- 나이스에서 사용되는 편입학의 구분

- A초등학교 중단 후 A초등학교로 입급: 편입학(본교)
- A초등학교 중단 후 B초등학교로 입급: 편입학(타학교)

2) 나이스 처리 방법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초등학교를 중단한 후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온 경우 '편입학(본교)' 또는 '편입학(타학교)'으로 등록한 후 학적을 반영함.

(1단계-a) 편입학(본교) 등록하기



- ① ~ ② [학적]-[전입관리]-[전입학/편입학/재취학]의 {등록/자료요청} 탭에서 '학년도(2022)', '상태(전체)' 확인 후 '기간(2022.03.01~2022.07.31)' 설정하여 {조회}함.
- ③ {등록}을 클릭함.
- ④ '전입 학생 등록' 창에서 '변동구분(편입학(본교))'을 선택함.
- ⑤ ~ ⑧ {학생찾기}로 '편입생 학생 찾기' 창에서 '성명(JACKSON KIM)' 입력('전입학/편입학/재취학생 기본사항'과 '이전학적'이 자동으로 입력됨)하여 {조회}하고, '전입학/편입학/재취학생 기본사항'의 '비고(학생과 보호자의 학습 희망)' 입력함. 모든 정보가 입력되면 {저장}함.



더 알아보기

- ‘편입생 학생찾기’에서 성명(JACKSON KIM)을 입력하고 {조회}하여 편입생을 검색함. 성명을 검색할 때는 이름 전체를 입력한 후 조회해야 검색이 됨.

학년	반	번호	성명	학칙	외국국적 학년도
1	3	28	JACKSON KIM	연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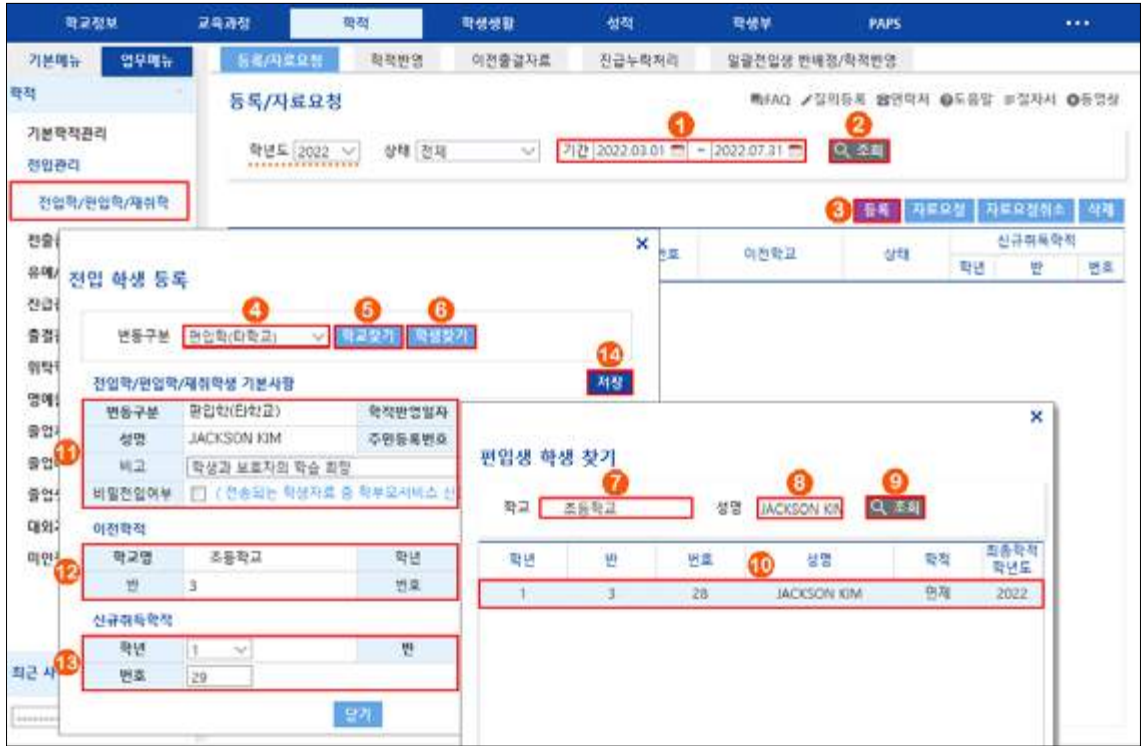
- 편입생 등록 시 본교로 편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찾기’를 할 필요가 없음. 다만, {학교찾기}를 클릭하면 “재취학(본교) 및 편입학(본교)는 학교찾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확인}하면 편입생 등록 화면으로 전환됨.

<1단계-b> 편입생(본교) 학적 반영하기

학번	구분	전출학교	성명	신규취득학칙	상태	결재상황
2022.06.22	편입학(본교)		JACKSON KIM	1 3 29	전입등록	미상신

- ① ~ ③ [학적]-[전입관리]-[전입학/편입학/재취학]의 {학적반영} 탭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기간(2022.03.01~2022.07.31)' 설정하고, '학적미반영' 선택하여 {조회}함.
- ④ 학적반영할 학생의 '학적반영일자(2022.06.22)', '구분(편입학(본교))', '전출학교(○○초등학교)', '성명(JACKSON KIM)', '신규취득학칙의 '학년(1)', '반(3)', '번호(29)' 정보와 '상태(전입등록)' 및 '결재상황(미상신)' 정보가 조회됨.
- ⑤ {기안문상신}을 통해 업무승인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학적반영}함.

〈2단계-a〉 편입학(타학교) 등록하기



- ① ~ ③ [학적]-[전입관리]-[전입학/편입학/재취학]의 {등록/자료요청} 탭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기간(2022.03.01~2022.07.31)' 설정하고, {조회}하여 {등록}함.
- ④ '전입 학생 등록' 창의 '변동구분'에서 '편입학(타학교)'를 선택함.
- ⑤ {학교찾기}를 통해 편입 학생의 이전 학교명을 검색함.
- ⑥ {학생찾기}를 클릭하여 편입생 학생 찾기 화면으로 이동함.
- ⑦ ~ ⑨ {학생찾기}를 클릭한 후 '편입생 학생 찾기' 창에서 편입생의 '성명(JACKSON KIM)'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전입 학생의 '학년(1)', '반(3)', '번호(28)', '성명(JACKSON KIM)', '학적(면제)', '최종학적학년도(2022)' 등이 검색됨. {학생선택}을 클릭함.
- ⑩ '전입학/편입학/재취학생 기본사항'을 통해 '변동구분(편입학(타학교))', '학적반영일자', '성명(JACKSON KIM)'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면, '비고(학생과 보호자의 학습 희망)'를 입력함.
- ⑪ '이전학적' 란에는 '편입생 학생 찾기'를 통해 검색된 학생의 이전 학교의 학적 내용이 자동으로 보여짐.
- ⑫ ~ ⑬ '신규취득학적'에서 편입생의 '학년(1)', '반(3)', '번호(29)'를 입력한 후 {저장}함.

<2단계-b> 편입학(타학교) 자료 요청하기



- ① ~ ② [학적]-[전입관리]-[전입학/편입학/재취학]의 {등록/자료요청} 탭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기간 (2022.03.01~2022.07.31)' 설정하여 {조회}함.
- ③ ~ ④ 편입학(타학교) 대상 학생을 선택한 후 {자료요청}함.

<2단계-c> 편입생(타학교) 학적 반영하기



- ① ~ ③ [학적]-[전입관리]-[전입학/편입학/재취학]의 {학적반영} 탭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기간 (2022. 03.01~2022.07.31)' 설정하고, '학적미반영' 선택하여 {조회}함.
- ④ '학적반영' 할 학생의 '학적반영일자(2022.06.22.)', '구분(편입학(타학교))', '전출학교 (OO 초등학교)', '성명(JACKSON KIM)', 신규취득학적 정보인 '학년(1)', '반(3)', '번호(29)' 등의 정보와 '상태(전입자료 도착)', '결재상황(미상신)'을 확인함.
※ 반드시 '상태'는 '전입자료도착'이 되어있어야 함.
- ⑤ {기안문상신}을 통해 업무승인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학적반영}함.



더 알아보기

- 편입학(타학교)하는 학교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은 원적교**에서는 [학적]-[전출관리]-[전출]의 {자료요청 접수 및 송부} 탭에서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를 {전출자료보내기}로 전송함.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국내 초등학교 입학 →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에 의해 2학년 재학 중 학업 중단 → 다른 초등학교에 2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C O O O O O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13 O O O O - 7 O O O O O O O 주소 : O O 도 O O 시 O O 구 O O 길 37
학적사항	2020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1년 06월 25일 면제) 2022년 05월 17일 △△초등학교 제2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2021.06.25. 본인과 보호자 희망에 의한 면제

- 국내 초등학교 입학 → 본국 귀국으로 인한 2학년 재학 중 학업중단 → 중국에서 학업을 계속 → 국내 같은 초등학교 3학년에 편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F O O O O O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13 O O O O - 7 O O O O O O O 주소 : O O 도 O O 시 O O 구 O O 로 81
학적사항	2020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1년 09월 14일 면제) 2022년 09월 19일 □□초등학교 제3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2021.09.14. 본국 귀국으로 인한 면제

- 중국 O O O O 학교(우리나라 초등학교급) 재학 → 국내 초등학교 3학년에 취학 → 본국 귀국으로 인한 4학년 재학 중 학업 중단 → 중국에서 학업을 계속 → 국내 같은 초등학교 5학년에 다시 편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R O O O O O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11 O O O O - 7 O O O O O O O 주소 : O O 도 O O 시 O O 구 O O 로 25
학적사항	2020년 05월 13일 □□초등학교 제3학년 취학(2021년 09월 03일 면제) 2022년 08월 25일 □□초등학교 제5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20 O O . O O . O O . - 20 O O . O O . O O . 중국 O O O O 학교 재학 2021.09.03. 본국 귀국으로 인한 면제

2. 중학교

가. 중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1) 학적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의 입학(신입학)과 동일하게 처리함.**
-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학생임.
- **사용되는 학적용어: 입학**
- 입학시기: 1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이 남은 시점(당해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1학년으로 처음 입급하는 경우 '입학'으로 처리함.

2) 나이스 처리 방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학생

- 외국 국적 학생이 중학교 1학년에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초등학교에서 전송되어오는 자료가 없으므로,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입학생을 등록하여 학적을 생성한 후 [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추가 자료를 입력함.
※ 전체 신입생 학적생성 이전에는 [입학]-[입학대상자관리]-[입학대상자관리]의 {기타(검정고시)} 탭에서 {추가}하여 '입학구분'을 '기타(학력인정)'로 선택, '성명', '성별', '주민번호'를 입력 후 {저장}하여 다른 신입생과 함께 학적을 생성하고 입학처리 후 추가 자료를 입력할 수 있음.

<1단계> 입학생 등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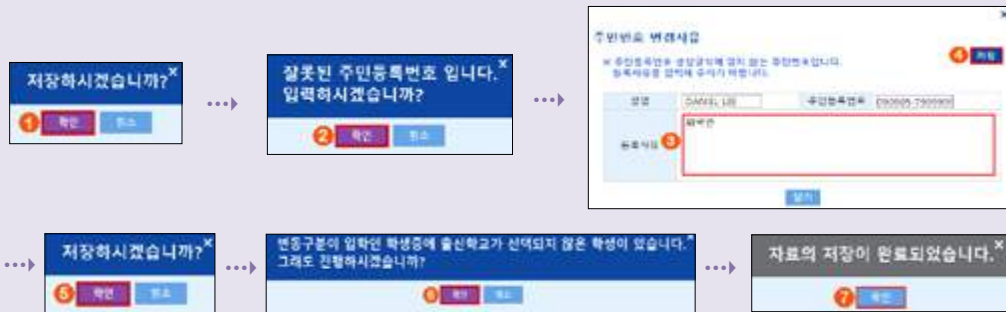


- ① ~ ②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학년도(2022)', '과정(주간)' 확인 후 '미반영된 자료' 선택하여 {조회}함.
- ③ ~ ⑤ {추가}를 클릭하여 하단의 내용인 '변동구분(입학)', '변동사유(기타정원외)' 선택, '학적반영일자(2022.03.02)', '주민등록번호(090905-7999999)', '성명(DANIEL LEE)' 입력, '주간/야간(주간)', '학년(1학년)', '반(1)' 선택, '번호(36)' 확인(번호는 해당 반의 마지막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됨) 후 {저장}함.
- ⑥ ~ ⑧ {승인요청}을 클릭하여 '기안문서상신' 창에서 '제목(추가입학/전산미등록자)' 확인, {결재자지정}, '내용(외국 국적 학생(DANIEL LEE)의 입학 관련 학적자료입니다.)' 입력, 해당학생(DANIEL LEE) 선택 후 {상신}하여 기안문 상신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학생(DANIEL LEE)을 선택하여 {학적반영}함.

더 알아보기

- {저장} 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됨.

※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입력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을 클릭한 후, ‘주민번호 변경사유’의 ‘등록사유’ 란에 ‘외국인’을 입력하고 {저장}함. “변동구분이 입학인 학생중에 출신학교가 선택되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을 클릭함(출신초등학교명은 입력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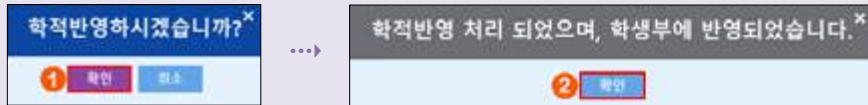


- 기안문 상신 과정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되며, 이후 나이스에서 기안문 상신은 동일한 과정을 거침.

선학	결재 순번	구분	학급구분	ID	성명	직위	소속
<input type="checkbox"/>	1	0	기안	li	이	교사(중등)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2	1	결재	s	강	교사(중등)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3	2	결재	nt	노	교감(중등)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4	3	결재	yon	윤	교장(중등)	중학교

- 1 ~ 3 '기안문서상신' 창에서 '학교급(중학교)', '문서종류선택(교무업무, 추가입학/전산미등록자)' 확인 후 '제목(추가입학/전산미등록자)'을 확인하고 {결재자지정}으로 결재자를 등록함.
- 4 ~ 6 '내용(외국 국적 학생(DANIEL LEE)의 입학 관련 학적자료입니다.)'을 입력한 후 해당학생을 선택하여 {상신}함.

-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학적반영}을 클릭함. “학적반영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을 클릭하고, 이후 나타나는 “학적반영 처리 되었으며, 학생부에 반영되었습니다.” 창에서 {확인}을 클릭함.



〈2단계〉 추가 자료 입력하기



- ① ~ ②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성명(DANIEL LEE)' 입력하여 {조회}함.
- ③ ~ ⑥ 해당학생(DANIEL LEE) 선택 후 {인적사항} 탭 등에서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함.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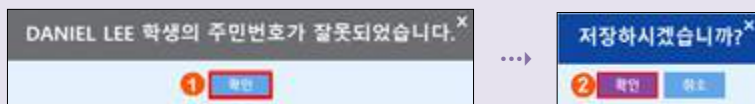
- 입학생에 대해서는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의 {기본신상},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학생의 기본신상 자료(사진 등)를 등록할 수 있음.



- 전체 신입생 학적생성 이전의 경우는 [입학]-[입학대상자관리]-[입학대상자관리]의 {기타(검정고시)} 탭에서 '입학구분'을 '기타(학력인정)'로 선택하여 입력한 후 다른 신입생과 함께 학적을 생성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저장}시 "DANIELLEE 학생의 주민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창에서{확인}을 클릭한후, "저장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을 클릭함.



※ 관련 메뉴: [입학]-[입학대상자관리]-[입학대상자관리], [입학대상자조회], [학적일괄생성], [입학자현황조회]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외국 국적 학생
 - 중국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 ○학년 졸업 → 국내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D○○○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9○○○○-7○○○○○○ 주소 : ○○도 ○○시 ○○구 ○○길 16
학적사항	2022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 국내 초등학교를 졸업한 외국 국적 학생
 - 중국에서 국내 초등학교에 취학하여 졸업 후 국내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P○○○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9○○○○-7○○○○○○ 주소 : ○○도 ○○시 ○○구 ○○로 62
학적사항	2022년 02월 04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2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 학력심의를 통해 중학교에 입학한 외국 국적 학생
 - 시도교육청의 학력심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를 통해 국내 중학교에 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K○○○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9○○○○-7○○○○○○ 주소 : ○○도 ○○시 ○○구 ○○로 93
학적사항	2022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교육청 학력심의를 통해 취학 이전 학력 인정

- 학교의 학력심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를 통해 국내 중학교에 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L○○○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9○○○○-7○○○○○○ 주소 : ○○도 ○○시 ○○구 ○○길 123
학적사항	2022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학교의 학력심의를 통해 취학 이전 학력 인정

<외국 국적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입력 유의사항>

-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함.

-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성별은 '남' 또는 '여'로 구분하여 입력함.
- 복수국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적용하여 입력함.

-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 된 외국국적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함.

-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함.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 따라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으로 하고,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입력하며 동성 쌍둥이일 경우 끝자리에 1·2를 부여함.

예1) 남학생의 경우: 080521-3000000

예2) 여학생의 경우: 080809-4000000

예3) 동성 쌍둥이인 경우: 080315-3000001, 080315-3000002

<외국 국적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함.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나이스의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처리함.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기재 경로>

- 신입생의 학생정보(성명 제외) 수정: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 재학생: 나이스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
- 학업중단학생: 나이스의[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이름으로조회}-{학생찾기}
- ※ 신입생이 입학 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개명을 제외한 학생정보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학적반영 취소 후 수정
- 졸업생: 나이스의 [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 보존시스템으로 자료가 이관된 졸업생: 나이스의 [학생부보존]-[학생부보존(중)/학생부보존(특)]-[학생부정정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나. 학기 중에 들어온 경우

1) 학적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학기 중 입급하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함.
 - ※ 2017학년도부터 '취학'으로 적용
-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학생임.
- 사용되는 학적용어: 취학

2) 나이스 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학기 중에 들어온 경우, 국내에 '취학' 이전의 자료가 없으므로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취학'으로 등록하여 학적을 생성한 후 [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추가 자료를 입력함.
 - ※ '취학' 이전의 내용은 공란으로 둬.

〈1단계〉 등록하기



- ① ~ ②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학년도(2022)', '과정(주간)' 확인 후 '미반영된 자료' 선택하여 {조회}함.
- ③ ~ ⑤ {추가}를 클릭하여 하단의 내용인 '변동구분(취학)', '학적반영일자(2022.09.06)', '주민등록번호(080905-7999999)', '성명(DANIEL LEE)'입력, '주간/야간(주간)', '학년(2학년)', '반(1)' 선택, '번(36)' 확인(번호는 해당 반의 마지막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됨) 후 {저장}함.
 - ※ '출신초등학교명'은 입력하지 않음.

- ⑥ ~ ⑧ {승인요청}을 클릭하여 ‘기안문서상신’ 창에서 ‘제목(추가입학/전산미등록자) 확인, {결재자지정}, ‘내용(외국 국적 학생(DANIEL LEE)의 취학 관련 학적자료입니다.)’ 입력, 해당학생(DANIEL LEE) 선택 후 {상신}하여 기안문 상신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학생(DANIEL LEE)을 선택하여 {학적반영}함.

더 알아보기

- {저장} 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됨.

※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입력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을 클릭한 후, ‘주민번호 변경사유’의 ‘등록사유’란에 ‘외국인’을 입력하고 {저장}함.



<2단계> 추가 자료 입력하기

- ① ~ ②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료입력]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성명(DANIEL LEE)’ 입력하여 {조회}함.
- ③ ~ ⑥ 해당학생(DANIEL LEE) 선택 후 {인적사항} 탭 등에서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함.



더 알아보기

- 취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의 {기본신상},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학생의 기본신상 자료(사진 등)를 등록할 수 있음.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중국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 ○학년 졸업 후 중국 ○○○○학교(우리나라 중학교급) 재학 → 국내 중학교 2학년으로 들어온 경우

학생정보	성명 : N○○○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8○○○○-7○○○○○○○ 주소 : ○○도 ○○시 ○○구 ○○길 34
학적사항	2022년 09월 06일 □□중학교 제2학년 취학
특기사항	

- 학력심의를 통해 국내 초등학교 2학년으로 들어온 경우
- 시도교육청의 학력심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를 통해 들어온 경우

학생정보	성명 : J○○○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8○○○○-7○○○○○○○ 주소 : ○○도 ○○시 ○○구 ○○로 32
학적사항	2022년 09월 06일 □□중학교 제2학년 취학
특기사항	○○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취학 이전 학력 인정

- 학교의 학력심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를 통해 들어온 경우

학생정보	성명 : P○○○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8○○○○-7○○○○○○ 주소 : ○○도 ○○시 ○○구 ○○로 89
학적사항	2022년 09월 06일 □□중학교 제2학년 취학
특기사항	○○○학교의 학력심의를 통해 취학 이전 학력 인정

〈외국 국적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입력 유의사항〉

-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함.

-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성별은 '남' 또는 '여'로 구분하여 입력함.
- 복수국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적용하여 입력함.

-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 된 외국국적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함.

-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함.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 따라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으로 하고,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입력하며 동성 쌍둥이일 경우 끝자리에 1·2를 부여함.

예1) 남학생의 경우: 080521-3000000

예2) 여학생의 경우: 080809-4000000

예3) 동성 쌍둥이인 경우: 080315-3000001, 080315-3000002

<외국 국적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함.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나이스의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처리함.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기재 경로>

- 신입생의 학생정보(성명 제외) 수정: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 재학생: 나이스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
- 학업중단학생: 나이스의[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이름으로조회}-{학생찾기}
 - ※ 신입생이 입학 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개명을 제외한 학생정보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학적반영 취소 후 수정
- 졸업생: 나이스의 [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 보존시스템으로 자료가 이관된 졸업생: 나이스의 [학생부보존]-[학생부보존(중)/학생부보존(특)]-[학생부정정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다. 학교를 중단한 경우

1) 학적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면제'로 처리함.
- 외국 국적 학생이 미인정결석 등으로 인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하여 해당 학년 수료기준인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장 결정으로 '면제' 처리할 수 있음.
 - ※ 면제 처리하는 경우 '정원의 관리'를 하지 않음.
 - ※ 외국 국적 학생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사용되는 학적용어: 면제

2) 나이스 처리 방법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중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에서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면제'로 처리함.

〈면제 등록 후 학적 반영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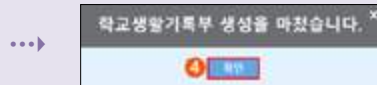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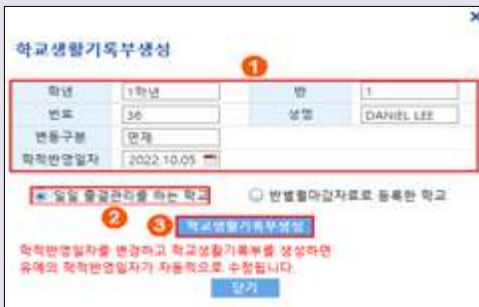
- ① ~ ③ [학적]-[학업중단관리]-[유예/면제관리]에서 '학년도(2022)', '과정(주간)' 확인 후 '기간(2022.03.01 ~ 2022.10.05)' 설정하고, '미반영된자료' 선택하여 [조회]함.
- ④ ~ ⑥ {추가}를 클릭하여 하단의 '유예/면제 등록'에서 내용('변동일자(2022.10.05)', '변동구분(면제)' 선택, {학생찾기}를 클릭하여 '성명(DANIEL LEE)' 입력 후 검색된 목록에서 더블클릭('학년(1학년)', '반(1)' '번호(36)'가 자동으로 입력됨), '변동사유(기타)' 선택, '비고(기타(본국 귀국으로 인한 면제))' 입력, '학적 특기사항(2022.10.05. 본국 귀국으로 인한 면제)' 입력 후 {저장}함.
 ※ 변동일자는 면제일로 함.
- ⑦ ~ ⑧ 목록을 클릭하여 오른쪽 하단의 {기본학적}, {학생생활}, {성적},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내역}, {PAPS}, {국가학업성취도}, {학부모서비스신청내역}, {정정대장}, {방과후학교스포츠클럽누가기록}, {개별화 교육계획}에서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학급담임교사(업무담당교사)가 해당 메뉴에서 입력함.**
- ⑨ {학교생활기록부생성}을 클릭하여 '학교생활기록부생성' 창에서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의 출결관리유형을 선택한 후 {학교생활기록부생성}을 클릭함.
- ⑩ ~ ⑫ {승인요청}을 클릭하여 '기안문서상신' 창에서 '제목(유예/면제)' 확인, {결재자지정}, '내용(외국 국적 학생(DANIEL LEE)의 면제처리 학적자료입니다.)' 입력, 해당학생(DANIEL LEE) 선택 후 {상신}하여 기안문 상신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학생(DANIEL LEE)을 선택하여 {학적반영}함.

더 알아보기

- ‘유예/면제 등록’ 창에서 ‘성명’ 옆의 **학생찾기** 를 클릭 후 ‘중학교 학생찾기’ 창에서 ‘성명(DANIEL LEE)’ 입력하여 {조회}함. 해당학생 목록을 더블클릭하면 ‘성명(DANIEL LEE)’과 ‘학년(1학년), 반(1), 번호(36)’가 자동으로 입력됨.



- {학교생활기록부생성}은 면제대상학생을 {추가}하여 {저장}한 후 목록에서 면제대상학생을 선택하면 나타남. ‘학교생활기록부생성’ 창에서 ‘일일 출결관리를 하는 학교’ 선택([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 (담임용)])을 활용하는 학교)한 후 {학교생활기록부생성}을 클릭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에 학적변동 내역이 등록되며, ‘출결상황’에 학적반영일자를 기준으로 수업일수와 출결통계가 등록됨.



- ④번 과정에서 {기본학적} 등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학급담임교사 (업무담당교사)가 해당 메뉴에서 입력함.



- 면제 등의 학업을 중단한 자가 재취학 등으로 학적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교육부훈령 제18조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함.
- 학급담임교사(업무담당교사)는 ‘면제’ 처리 전 면제일자까지 학교생활기록부를 생성함.
 - 학생이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이수시간·특기사항, 성적(미인정결시는 당해고사 인정점 포함),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와 학교생활기록부는 나이스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함.
 -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학급담임교사(업무담당교사)는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자료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입력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완료함.
 - 1) 인적·학적 특기사항 입력(학적변동의 사유 입력)
 - 2) 출결상황 입력
 - 3)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수시간, 누가기록, 특기사항 입력
 - 4)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정규교육과정외 학교스포츠클럽)의 클럽명(시간) 입력
 - 5) 봉사활동 누가기록 입력
 - 6) 자유학기 활동의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 등 관련 내용 입력
 - 7) 수상실적 등 본교에서 재학 중 발생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였는지 확인하여 미기재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입력
 - 8) 수행평가가 완료된 영역의 수행평가 입력 여부를 교과담당교사에게 확인
 - 9)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반영 및 최종 입력 확인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중국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 졸업 → 국내 중학교 입학 → 학교생활부적응으로 미인정결석하여 2학년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G○○○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8○○○○-7○○○○○○ 주소 : ○○도 ○○시 ○○구 ○○길 26
학적사항	2021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6월 22일 면제)
특기사항	20○○.○○.○○. 중국 ○○○○학교 ○학년 졸업 2022.06.22. 장기결석으로 인한 면제

-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 졸업 후 베트남 ○○○○학교(우리나라 중학교급) 재학 → 국내 중학교 2학년에 취학 → 가정사정으로 3학년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H○○○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7○○○○-7○○○○○○ 주소 : ○○도 ○○시 ○○구 ○○로 65
학적사항	2021년 08월 21일 △△중학교 제2학년 취학(2022년 09월 16일 면제)
특기사항	20○○.○○.○○. 베트남 ○○○○학교 ○학년 졸업 20○○.○○.○○.-20○○.○○.○○. 베트남 ○○○○학교 재학 2022.09.16. 가정사정으로 인한 면제

-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 졸업 → 중국 ○○○○학교(우리나라 중학교급) 재학 → 국내 중학교 2학년에 취학 → 본국 귀국으로 인해 2학년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M○○○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8○○○○-7○○○○○○ 주소 : ○○도 ○○시 ○○구 ○○로 78
학적사항	2022년 03월 02일 △△중학교 제2학년 취학(2022년 11월 14일 면제)
특기사항	2022.11.14. 본국 귀국으로 인한 면제

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중단 후 중학교로 들어온 경우

1) 학적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에서 의무교육기관(초·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중학교로 들어온 경우, '편입학'으로 처리함.
- 사용되는 학적용어: 편입학

- 나이스에서 사용되는 편입학의 구분

[초등학교 중단 후 중학교로 들어온 경우]

- A초등학교 중단 후 B중학교로 입급: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학누락자 등록]에서 '편입학'으로 등록

[중학교 중단 후 다시 중학교로 들어온 경우]

- A중학교 중단 후 A중학교로 입급: 편입학(본교)
- A중학교 중단 후 B중학교로 입급: 편입학(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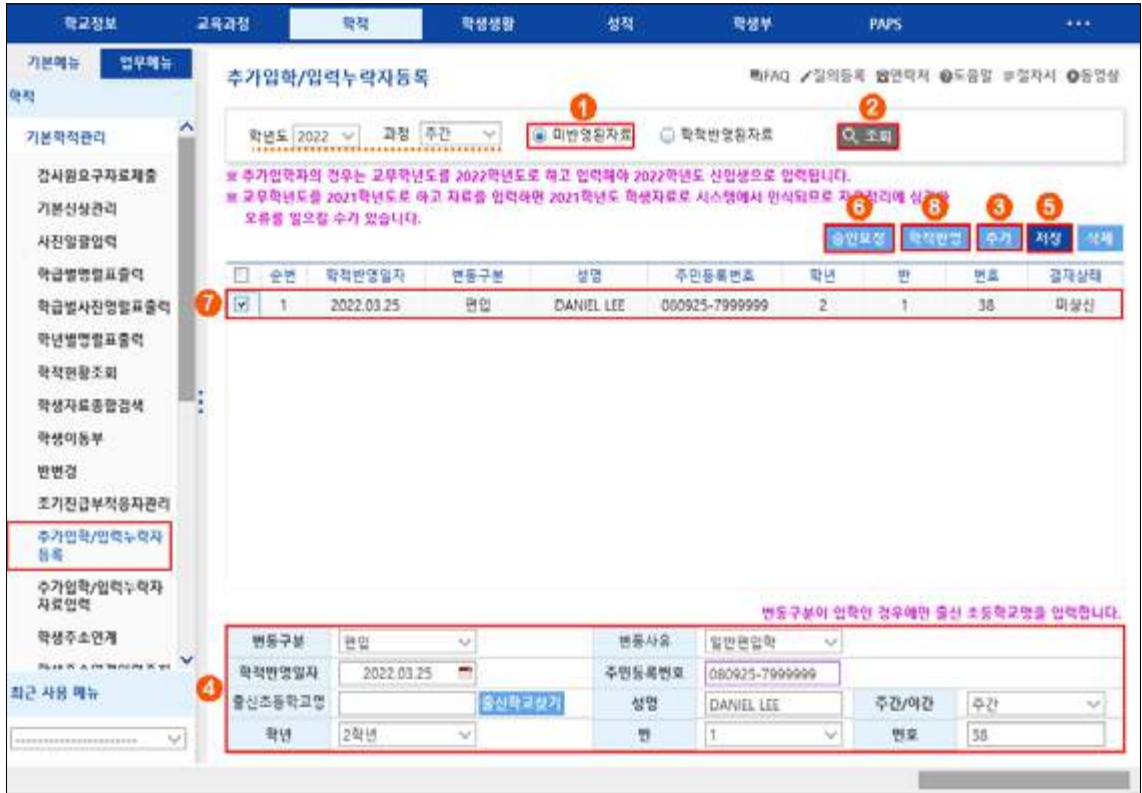
※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중학교에 처음으로 들어온 경우(의무교육기관에 처음으로 들어옴)는 '취학'으로 처리하고, 국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하였다가 학업을 중단한 후 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다가 학력을 인정받아 국내 중학교로 들어온 경우(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계속함)는 '편입학'으로 처리함.

2) 나이스 처리 방법

가) 초등학교 중단 후 중학교로 들어온 외국 국적 학생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초등학교를 중단한 후 중학교로 들어온 경우 국내 중학교에서 학적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학적을 생성하여야 함.

〈1단계〉 편입학 등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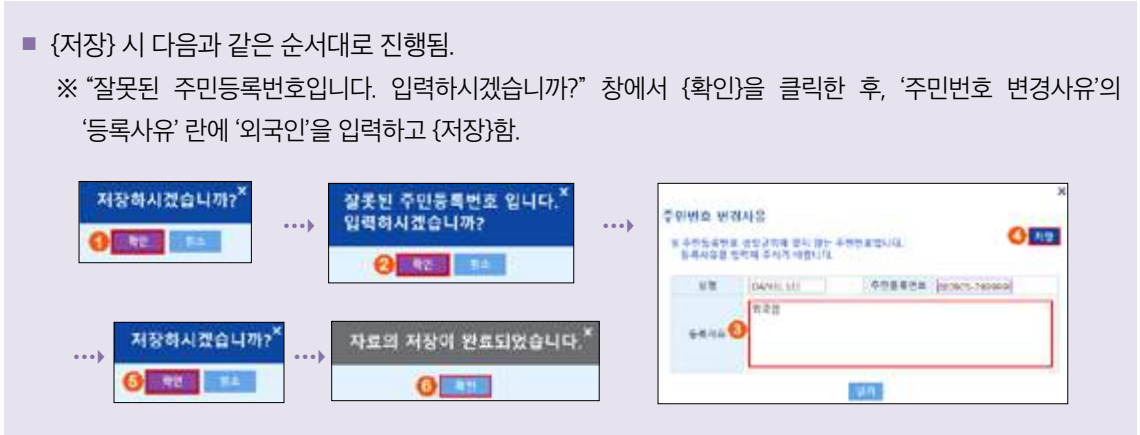


- ① ~ ②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학년도(2022)', '과정(주간)' 확인 후 '미반영된 자료' 선택하여 {조회}함.
- ③ ~ ⑤ {추가}를 클릭하여 하단의 내용인 '변동구분(편입)', '변동사유(일반편입학)', '학적반영일자(2022.03.25)', '주민등록번호(080905-7999999)', '성명(DANIEL LEE)입력', '주간/야간(주간)', '학년(2학년)', '반(1)' 선택, '번호(38)' 확인(번호는 해당 반의 마지막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됨) 후 {저장}함.
※ '출신초등학교명'은 입력하지 않음.
- ⑥ ~ ⑧ {승인요청}을 클릭하여 '기안문서상신' 창에서 '제목(추가입학/전산미등록자)' 확인, {결재자지정}, '내용(외국 국적 학생(DANIEL LEE)의 편입학 관련 학적자료입니다.)' 입력, 해당학생(DANIEL LEE) 선택 후 {상신}하여 기안문 상신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학생(DANIEL LEE)을 선택하여 {학적반영}함.

 더 알아보기

■ {저장} 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됨.

※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입력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을 클릭한 후, ‘주민번호 변경사유’의 ‘등록사유’란에 ‘외국인’을 입력하고 {저장}함.



〈2단계〉 추가 자료 입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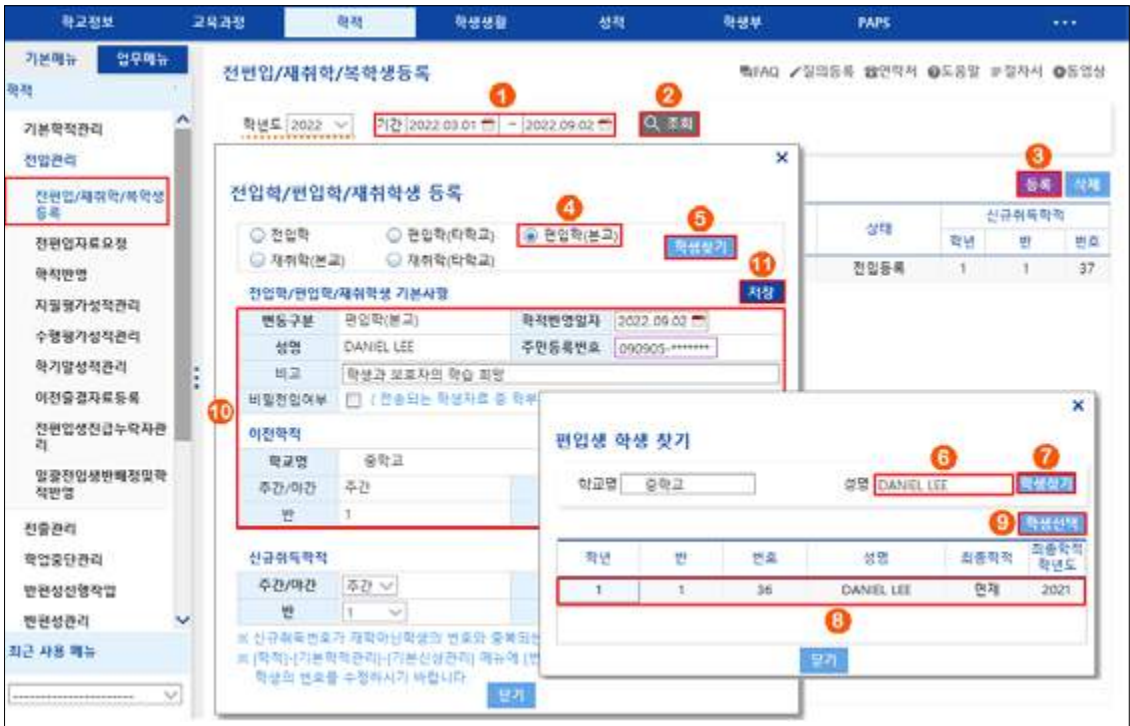
① ~ ②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료입력]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성명(DANIEL LEE)’ 입력하여 {조회}함.

③ ~ ⑥ 해당학생(DANIEL LEE) 선택 후 {인적사항} 탭 등에서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함.

나) 중학교 중단 후 다시 중학교로 들어온 외국 국적 학생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중학교를 중단한 후 다시 중학교로 들어온 경우 ‘편입학(본교)’ 또는 ‘편입학(타학교)’으로 등록한 후 학적을 반영함.

〈1단계-a〉 편입학(본교) 등록하기



- ① ~ ② [학적]-[전입관리]-[전편입/재취학/복학생등록]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기간(2022.03.01~2022.09.02)’ 설정하여 {조회}함.
- ③ ~ ⑤ {등록}을 클릭하여 ‘전입학/편입학/재취학생 등록’ 창에서 ‘편입학(본교)’ 선택 후 {학생찾기}를 클릭함.
- ⑥ ~ ⑧ ‘편입생 학생찾기’ 창에서 해당학생의 ‘성명(DANIEL LEE)’ 입력 후 {학생찾기}를 클릭하면 해당학생의 정보가 나타남. 해당학생을 선택한 후 {학생선택}을 클릭함.
- ⑩ ~ ⑪ ‘전입학/편입학/재취학생등록’ 창의 ‘전입학/편입학/재취학생기본사항’과 ‘이전학적’의내용을확인함. ‘비고’란에 ‘학생과 보호자의 학습 희망’으로 입력하고, ‘신규취득학적(주간/야간(주간), ‘학년(1), ‘반(1)’ 선택, ‘번호(37)’는 마지막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됨) 확인 후 {저장}함.

<1단계-b> 편입학(타학교) 등록 및 자료 요청하기

■ 편입학(타학교) 등록하기



- ① ~ ② [학적]-[전입관리]-[전편입/재취학/복학생등록]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기간(2022.03.01~2022.09.02)' 설정하여 {조회}함.
- ③ ~ ⑤ {등록}을 클릭하여 '전입학/편입학/재취학생 등록' 창에서 '편입학(타학교)' 선택 후 {학생찾기} 클릭함.
- ⑥ ~ ⑪ '편입생 학생 찾기' 창에서 이전 재적학교명을 입력한 후 {학교찾기} 클릭함. 해당학생의 '성명(DANIEL LEE)' 입력한 후 {학생찾기}를 클릭하면 해당학생의 정보가 나타남. 해당학생을 선택한 후 {학생선택}을 클릭함.
- ⑫ ~ ⑬ '전입학/편입학/재취학생 등록' 창의 '전입학/편입학/재취학생 기본사항'과 '이전학적'의 내용을 확인함. '비고'란에 '학생과 보호자의 학습 희망'으로 입력하고, '신규취득학적(주간/야간/주간)', '학년(1)', '반(1)' 선택, '번호(37)'는 마지막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됨 확인 후 {저장}함.

■ 편입학(타학교) 자료 요청하기



- ① ~ ② [학적]-[전입관리]-[전편입자료요청]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기간(2022.03.01~2022.09.02)' 설정하여 {조회}함.
- ③ ~ ④ 편입학(타학교) 대상 학생을 선택한 후 {자료요청}을 클릭함.

 더 알아보기

- ④번 과정에서 {자료요청}하면 나타나는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을 클릭함. 이후 나타나는 “DANIEL LEE 학생의 자료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창에서 {확인}을 클릭함.



- 등록된 편입생(본교, 타학교)의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목록을 클릭하여 '전입학/편입학/재취학생 수정' 창에서 입력 내용을 수정한 후 {저장}함.

학번	이름	주입등록번호	이전학교	상태	신규취득학적			
2022.09.02	편입학(본교)	DANIEL LEE	090905-*****	중학교	전입등록	1	1	37

〈2단계〉 편입생(본교, 타학교) 학적 반영하기



- ① ~ ② [학적]-[전입관리]-[학적반영]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기간(2022.03.01~2022.09.02)' 설정하고 {학적미반영}을 선택하여 {조회}함.
- ③ ~ ⑤ 목록에서 '성명(DANIEL LEE)'을 클릭하여 '학적반영 자료선택'의 각종 항목({기본학적}, {학생생활}, {성적},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내역}, {PAPS자료}, {국가학업성취도},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 {정정대장}, {방과후학교스포츠클럽 누가기록}, {개별화교육계획})의 입력된 자료를 확인한 후 {목록으로} 클릭함.
 ※ '상태는 반드시 전입자료도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⑥ ~ ⑦ 해당학생을 선택한 후 {기안문작성}을 클릭하여 '기안문서상신' 창에서 '제목(전입/편입/재취학/복학) 확인, {결재자지정}, '내용(외국 국적 학생(DANIEL LEE)의 편입학 관련 학적자료입니다.)' 입력, 해당학생(DANIEL LEE) 선택 후 {상신}하여 기안문 상신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학생(DANIEL LEE)을 선택하여 {학적반영}함.

6 확인 취소

전송 자료를 전송하시겠습니까?
전송 시에는 학생부(반영) 이수시간과
학생생활(누가기록) 이수시간 및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을 비교합니다.

...>

7 확인

자료를 전송하였습니다.

학교정보 교육과정 학적 학생생활 성적 학생부 PAPS

기본학적관리 업무관리

학적

기본학적관리
전입관리
전출관리
자료요청접수및송부
학적변경
동해합학교전출학적생처리

자료요청접수및송부

학년도 2022 과정 주간 기간 2022.03.01 - 2022.09.02 조회

2022.01.01~2022.09.02

전입학년도	전입일자	요청구분	학년	반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학교명	상태	전송상태
2022	2022.09.02	동일학/타학교	1	1	36	DANIEL LEE	000005-7*****	중학교	편입생	전송완료

① ~ ② '학년도(2022)', '과정(주간)' 확인 후 '기간(2022.03.01~2022.09.02)' 설정하여 {조회}함.

③ ~ ⑤ 목록에서 '상태(편입생)'와 '전송상태(전송대기)'를 확인 후 해당학생의 성명(DANIEL LEE)을 클릭하여 '접수내역'과 '이전학적'을 확인함. '학적변경 자료선택'에서 {기본학적}, {학생생활}, {성적},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내역}, {PAPS}, {국가학업성취도}, {학부모서비스 신청내역}, {정정대장},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누가기록}, {개별화 교육계획}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할 자료를 체크하여 {전출 자료보내기}를 클릭함. 이때 자료 요청교(타학교)에 전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란에 입력함.

⑥ ~ ⑧ 자료 전송 시 [학생생활]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누가기록 이수시간과 [학생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이수시간을 검증(동아리활동 특기사항 포함)한 후 이상 없으면 편입학하는 타학교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를 전송하고 {목록으로}를 클릭함.

⑨ 목록에서 '전송상태'가 변경(전송대기 → 전송완료)된 것을 확인함.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국내 중학교 중단 후 다시 중학교로 입급하는 외국 국적 학생

- 중국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 ○학년 졸업 → 국내 중학교 입학 → 미인정결석으로 인한 2학년 재학 중 학업 중단 → 국내 중학교 2학년 편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D○○○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7○○○○-7○○○○○○ 주소 : ○○도 ○○시 ○○구 ○○길 123
학적사항	2020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1년 06월 27일 면제) 2022년 03월 02일 □□중학교 제2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20○○.○○.○○. 중국 ○○○○학교 ○학년 졸업 2021.06.27.장기결석으로 인한 면제

-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 ○학년 졸업 → 베트남 ○○○○학교(우리나라 중학교급) 재학 → 국내 중학교 1학년 취학 → 가정사정으로 인한 2학년 재학 중 학업 중단 → 베트남에서 학업 계속 → 국내 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E○○○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7○○○○-7○○○○○○ 주소 : ○○도 ○○시 ○○구 ○○로 16
학적사항	2019년 11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취학(2021년 09월 14일 면제) 2022년 09월 23일 △△중학교 제3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20○○.○○.○○. 베트남 ○○○○학교 ○학년 졸업 2021.09.14. 가정사정으로 인한 면제

■ 국내 초등학교 중단 후 중학교로 입급하는 외국 국적 학생

- 국내 초등학교 입학 → 본국 귀국으로 인한 초등학교 5학년 재학 중 학업 중단 → 필리핀에서 학업 계속 → 국내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F○○○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8○○○○-7○○○○○○ 주소 : ○○도 ○○시 ○○구 ○○로 35
학적사항	2022년 09월 23일 △△중학교 제2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20○○.○○.○○. 필리핀 ○○○○학교 ○학년 졸업

3. 고등학교

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1) 학적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의 입학(신입학)과 동일하게 처리함.**
-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학생임.
- **사용되는 학적용어: 입학**
- 입학시기: 1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당해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1학년으로 처음 입급하는 경우 '입학'으로 처리함.

2) 나이스 처리 방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 국적 학생

- 외국 국적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에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중학교에서 전송되어오는 자료가 없으므로,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입학생을 등록하여 학적을 생성한 후 [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추가 자료를 입력함.

※ 전체 신입생 학적생성 이전에는 [입학]-[입학관리]-[입학대상자관리]의 {기타(검정고시)} 탭에서 {추가} 하여 '입학구분'을 '기타(학력인정)'로 선택, '성명', '성별', '주민번호'를 입력, '주야구분', '계열', '학과'를 선택 후 {저장}하여 다른 신입생과 함께 학적을 생성하고 입학처리 후 추가 자료를 입력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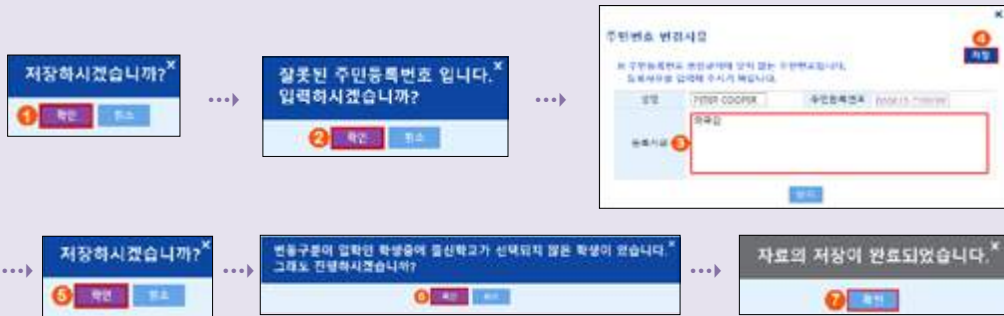
〈1단계〉 입학생 등록하기



- ① ~ ②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학년도(2022)', '과정(주간)' 확인 후 '미반영 된자료' 선택하여 {조회}함.
- ③ ~ ⑤ {추가}를 클릭하여 하단의 내용('학적변동구분(입학)', '학적변동사유(기타정원외)' 선택, '학적반영일자 (2022.03.02)', '성명(PETER COOPER)', '주민등록번호(060615-7999999)' 입력, '주야과정구분 (주간)', '계열(일반계)', '학과(7차일반)', '학년(1학년)', '반(7차일반-2)' 선택, '번호(34)' 확인(번호는 해당 반의 마지막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됨) 후 {저장}함.
※ '출신중학교명'은 입력하지 않음.
- ⑥ ~ ⑧ {승인요청}을 클릭하여 '기안문서상신' 창에서 '제목(추가입학/입력누락자료)' 확인, {결재자지정} 후 '내용(외국 국적 학생(PETER COOPER)의 입학 관련 학적자료입니다.)' 입력, 해당학생(PETER COOPER) 선택 후 {상신}하여 기안문 상신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학생 (PETER COOPER)을 선택하여 {학적반영}함.

더 알아보기

- {저장} 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됨.
 - ※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입력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을 클릭한 후 ‘주민번호 변경사유’의 ‘등록사유’ 란에 ‘외국인’을 입력하고 {저장}함. “변동구분이 입학인 학생중에 출신학교가 선택되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을 클릭함.



- 기안문 상신 과정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되며, 이후 나이스에서 기안문 상신 과정은 동일한 과정을 거침.

- 1 ~ 3 '기안문서상신' 창에서 '학교급(고등학교)', '문서종류선택(교무업무, 추가입학/입력누락자료)' 확인 후 '제목(추가입학/입력누락자료)'을 확인하고 {결재자지정}으로 결재자를 등록함.
- 4 ~ 6 '내용(외국 국적 학생(PETER COOPER)의 입학 관련 학적자료입니다.)'을 입력한 후 해당학생을 선택하여 {상신}함.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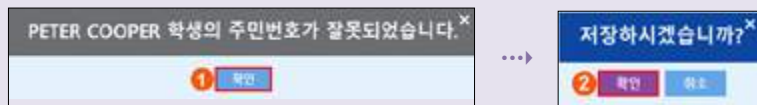
- 입학생에 대해서는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의 {기본신상},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학생의 기본신상 자료(사진 등)를 등록할 수 있음.



- 전체 신입생 학적생성 이전의 경우는 [입학]-[입학관리]-[입학대상자관리]의 {기타(검정고시)} 탭에서 '입학구분'을 '기타(학력인정)'로 선택하여 입력한 후 다른 신입생과 함께 학적을 생성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저장} 시 “PETER COOPER 학생의 주민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창에서 {확인}을 클릭한 후, “저장 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을 클릭함.



※ 관련 메뉴: [입학]-[입학관리]-[입학대상자관리], [입학대상자조회], [학적일괄생성], [입학자현황조회]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외국에서 우리나라 중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외국 국적 학생

-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중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 ○학년 졸업 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D○○○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6○○○○-7○○○○○○ 주소 : ○○도 ○○시 ○○구 ○○길 123
학적사항	2022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 국내 중학교를 졸업한 외국 국적 학생

- 중국에서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 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E○○○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6○○○○-7○○○○○○ 주소 : ○○도 ○○시 ○○구 ○○로 13
학적사항	2022년 02월 11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2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 학력심의를 통해 국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외국 국적 학생

- 시도교육청의 학력심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를 통해 국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K○○○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6○○○○-7○○○○○○ 주소 : ○○도 ○○시 ○○구 ○○로 59
학적사항	2022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

- 학교의 학력심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를 통해 국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P○○○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6○○○○-7○○○○○○ 주소 : ○○도 ○○시 ○○구 ○○로 64
학적사항	2022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
특기사항	고등학교의 학력심의를 통해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

〈외국 국적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입력 유의사항〉

-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함.

-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성별은 '남' 또는 '여'로 구분하여 입력함.
- 복수국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적용하여 입력함.

-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 된 외국국적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함.

-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함.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 따라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으로 하고,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입력하며 동성 쌍둥이일 경우 끝자리에 1:2를 부여함.

예1) 남학생의 경우: 030521-3000000

예2) 여학생의 경우: 040809-4000000

예3) 동성 쌍둥이인 경우: 050315-3000001, 050315-3000002

〈외국 국적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함.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나이스의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처리함.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기재 경로>

- 신입생의 학생정보(성명 제외) 수정: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 재학생: 나이스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
- 학업중단학생: 나이스의[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이름으로조회}-{학생찾기}
 - ※ 신입생이 입학 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개명을 제외한 학생정보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학적반영 취소 후 수정
- 졸업생: 나이스의 [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 보존시스템으로 자료가 이관된 졸업생: 나이스의 [학생부보존]-[학생부보존(고)/학생부보존(특)]-[학생부정정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나. 학기 중에 들어온 경우

1) 학적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학기 중(입학기간 경과 후)에 일정한 절차에 의해 입급하는 경우, **‘편입학’으로 처리함.**
-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학생임.
- **사용되는 학적용어: 편입학**
 - 해당 학교에서는 학칙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되,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음.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함.

2) 나이스 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학기 중에 들어온 경우 국내에 ‘편입학’ 이전의 자료가 없으므로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편입학’으로 등록을 하여 학적을 생성한 후 [추가입학/입력누락자자료입력]에서 추가 자료를 입력함.**
※ ‘편입학’ 이전 학년의 자료는 공란으로 둬.

〈1단계〉 편입생 등록하기



- ① ~ ②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학년도(2022)', '과정(주간)' 확인 후 '미반영된 자료' 선택하여 {조회}함.
- ③ ~ ⑤ {추가}를 클릭하여 하단의 내용인 '학적변동구분(편입)', '학적변동사유(일반편입학)' 선택, '학적반영일자(2022.09.06)', '성명(PETERCOOPER)', '주민등록번호(060615-7999999)' 입력, '주야과정구분(주간)', '계열(일반계)', '학과(7차일반)', '학년(1학년)', '반(7차일반-2)' 선택, '번호(34)' 확인(번호는 해당 반의 마지막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됨) 후 {저장}함.
 ※ '출신중학교명'은 입력하지 않음.
- ⑥ ~ ⑧ {승인요청}을 클릭하여 '기안문서상신' 창에서 '제목(추가입학/입력누락자료)' 확인, {결재자지정} 후 '내용(외국 국적 학생(PETER COOPER)의 편입학 관련 학적자료입니다.)' 입력, 해당학생(PETER COOPER) 선택 후 {상신}하여 기안문 상신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학생(PETER COOPER)을 선택하여 {학적반영}함.

 더 알아보기

- {저장} 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됨.
 - ※ “잘못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입력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을 클릭한 후, ‘주민번호 변경사유’의 ‘등록사유’란에 ‘외국인’을 입력하고 {저장}함.

〈2단계〉 추가 자료 입력하기

학번	번호	성명	명동구분
1	2	34 PETER CO	편입학

성명	PETER COOPER		
환자성명(연락)		주민등록번호	060615-7999999
성별	<input checked="" type="radio"/> 남성 <input type="radio"/> 여성	주간/야간	주간
생년월일	2006.06.15	학적구분	편입학
주소			
사진등록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수변환)"/>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 ① ~ ③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료입력]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성명(PETER COOPER)' 입력하여 {조회}함.
- ③ ~ ⑥ 해당학생(PETER COOPER) 선택 후 {인적사항} 탭 등에서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함.



더 알아보기

- 편입생에 대해서는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의 {기본신상},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학생의 기본신상 자료(사진 등)를 등록할 수 있음.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중국에서 우리나라 중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 ○학년 졸업 후 중국 ○○○○학교(우리나라 고등학교급) 재학 → 국내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G○○○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5○○○○-7○○○○○○ 주소 : ○○도 ○○시 ○○구 ○○길 100
학적사항	2022년 09월 06일 □□고등학교 제2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 학력심의를 통해 국내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한 외국 국적 학생
- 시도교육청의 학력심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를 통해 국내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K○○○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5○○○○-7○○○○○○ 주소 : ○○도 ○○시 ○○구 ○○로 20
학적사항	2022년 08월 26일 □□고등학교 제2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교육청의 학력심의를 통해 편입학 이전 학력 인정

- 학교의 학력심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8 조의 3)를 통해 국내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H O O O O O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5 O O O O - 7 O O O O O O O 주소 : O O 도 O O 시 O O 구 O O 로 43
학적사항	2022년 08월 26일 □□고등학교 제2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고등학교의 학력심의를 통해 편입학 이전 학력 인정

<외국 국적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입력 유의사항>

-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함.**

-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성별은 '남' 또는 '여'로 구분하여 입력함.
- 복수국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적용하여 입력함.

-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미부여 된 외국국적자 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입력함.**

-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함.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에 따라 앞 6자리는 생년월일, 뒤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으로 하고,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으로 입력하며 동성 쌍둥이일 경우 끝자리에 1:2를 부여함.

예1) 남학생의 경우: 030521-3000000

예2) 여학생의 경우: 040809-4000000

예3) 동성 쌍둥이인 경우: 050315-3000001, 050315-3000002

<외국 국적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함.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나이스의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처리함.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를 근거로 함.

※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기재 경로>

- 신입생의 학생정보(성명 제외) 수정: 나이스의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 재학생: 나이스의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
- 학업중단학생: 나이스의[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이름으로조회}-{학생찾기}
 ※ 신입생이 입학 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개명을 제외한 학생정보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학적반영 취소 후 수정
- 졸업생: 나이스의 [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 보존시스템으로 자료가 이관된 졸업생: 나이스의 [학생부보존]-[학생부보존(고)/학생부보존(특)]-[학생부정정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다. 학교를 중단한 경우

1) 학적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자퇴'로 처리함.
- 사용되는 학적용어: 자퇴

2) 나이스 처리 방법

자퇴 처리는 일반 재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

<자퇴생 등록 후 학적 반영하기>



- ①~③ [학적]-[학업중단관리]-[휴학/자퇴/퇴학/제적관리]에서 '학년도(2022)', '과정(주간)' 확인 후 '기간(2022.03.01~2022.09.09)' 설정하고, '미반영된자료' 선택하여 {조회}함.
- ④~⑥ {추가}를 클릭하여 하단의 '휴학/자퇴/퇴학/제적생등록' 창에서 내용('변동일자(2022.09.09)', '변동 구분(자퇴)' 선택, {학생찾기}로 '성명(PETER COOPER)' 입력 후 검색된 목록에서 더블클릭('학년(1학년)', '학과(7차일반)', '반(2)', '번호(34)'가 자동으로 입력됨), '변동사유([기타] 해외이주)' 선택, '비고([기타] 해외이주)' 확인, '학적 특기사항(2022.09.09. 본국 귀국으로 인한 자퇴)' 입력 후 {저장}함.
 ※ 변동일자는 자퇴일로 함.
- ⑦~⑧ 목록을 클릭하여 오른쪽 하단의 {기본학적}, {학생생활}, {성적},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내역}, {PAPS}, {국가학업성취도}, {학부모서비스 신청내역}, {정정대장}, {학교스포츠클럽누가기록}, {개별화교육계획}에서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학급담당교사(업무담당교사)가 해당 메뉴에서 입력함.**
- ⑨ {학교생활기록부생성}을 클릭하여 '학교생활기록부생성' 창에서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학교의 출결관리유형을 선택한 후 {학교생활기록부생성}을 클릭함.
- ⑩~⑫ {승인요청}을 클릭하여 '기안문서상신' 창에서 '제목(자퇴/퇴학/제적/휴학)' 확인, {결재자지정}, '내용(외국 국적 학생(PETER COOPER)의 자퇴 관련 학적자료입니다.)' 입력, 해당학생(PETER COOPER) 선택 후 {상신}하여 기안문 상신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학생(PETER COOPER)을 선택하여 {학적반영}함.

 더 알아보기

- 하단의 '휴학/자퇴/퇴학/제적생 등록' 창에서 '성명' 옆의 **학생찾기**를 클릭 후 '고등학교 학생찾기' 창에서 '성명(PETER COOPER)' 입력하여 {조회}함. 해당학생 목록을 더블클릭하면 '성명(PETER COOPER)'과 '학년(1학년)', '학과(7차일반)', '반(2)', '번호(34)'는 자동으로 입력됨.



- {학교생활기록부생성}은 자퇴생을 {추가}하여 {저장}한 후 목록에서 자퇴생을 선택하면 나타남. '학교생활기록부생성' 창에서 '일일 출결관리를 하는 학교' 선택([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을 활용하는 학교)한 후 {학교생활기록부생성}을 클릭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에 학적변동 내역이 등록되며, '출결상황'에 학적반영일자를 기준으로 수업일수와 출결통계가 등록됨.



- ⑧번 과정에서 {기본학적} 등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 학급담임교사 (업무담당교사)가 해당 메뉴에서 입력함.



- 자퇴, 퇴학, 휴학 등의 학업을 중단한 자가 편입학, 재입학 등으로 학적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를 교육부훈령 제18조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함.
- 학급담임교사(업무담당교사)는 '자퇴' 처리 전 자퇴일자까지 학교생활기록부를 생성함.
 - 학생이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자료[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이수시간·특기사항, 성적(미인정결시로 인한 당해고사 인정점 포함),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와 학교생활기록부는 나이스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함.
 -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 학급담임교사(업무담당교사)는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자료가 누락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입력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을 완료함.
 - 1)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입력(학적변동의 사유 입력)
 - 2) 출결상황 입력
 - 3)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수시간, 누가기록, 특기사항 입력
 - 4)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정규교육과정외 학교스포츠클럽)의 클럽명(시간) 입력
 - 5) 봉사활동실적 누가기록 입력
 - 6) 국가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기술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수상실적 등 본교에서 재학 중 발생한 모든 내용을 입력하였는지 확인하여 미입력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입력
 - 7) 수행평가가 완료된 영역의 수행평가 입력 여부를 교과담당교사에게 확인
 - 8)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반영 및 최종 입력 확인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중국 ○○○○학교(우리나라 중학교급) 재학 →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 → 국내 고등학교 1학년 입학 → 학교생활부적응으로 2학년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S○○○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5○○○○-7○○○○○○ 주소 : ○○도 ○○시 ○○구 ○○길 68
학적사항	2021년 02월 08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1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6월 16일 자퇴)
특기사항	2022.06.16.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자퇴

- 중국에서 우리나라 중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9학년) 졸업 → 중국 ○○○○학교(우리나라 고등학교급) 재학 → 국내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학 → 본국 귀국으로 인해 3학년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L○○○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4○○○○-7○○○○○○ 주소 : ○○도 ○○시 ○○구 ○○로 15
학적사항	2021년 05월 07일 □□고등학교 제2학년 편입학(2022년 09월 09일 자퇴)
특기사항	20○○.○○.○○. 중국 중학교 졸업 20○○.○○.○○.-20○○.○○.○○. 중국 고등학교 재학 2022.09.09. 본국 귀국으로 인한 자퇴

-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중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 ○학년 졸업 후 싱가포르 ○○○○학교(우리나라 고등학교급) 재학 → 국내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학 → 가정사정으로 2학년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N○○○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5○○○○-7○○○○○○ 주소 : ○○도 ○○시 ○○구 ○○로 36
학적사항	2022년 05월 11일 □□고등학교 제2학년 편입학(2022년 12월 07일 자퇴)
특기사항	2022.12.07. 가정사정으로 인한 자퇴

라.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단 후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온 경우

1) 학적처리 방법

-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고등학교(하위 학교급 포함)에서 학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온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으로 처리함.
- 사용되는 학적용어: 재입학, 편입학

- 나이스에서 사용되는 재입학과 편입학의 구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중단 후 고등학교로 들어온 경우]

- A초등학교 또는 B중학교 중단 후 C고등학교로 입급: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 등록]에서 '편입학'으로 등록

[고등학교 중단 후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온 경우]

- A고등학교 1학년 중단 후 A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급: **재입학**
- A고등학교 1학년 중단 후 A고등학교 2학년으로 입급: **편입학(본교)**
- A고등학교 중단 후 B고등학교로 입급: **편입학(타학교)**

※ 외국 국적 학생이 자퇴 후 자퇴 이전의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는 '재입학'으로 처리하고, 자퇴 이전의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국내 다른 고등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는 '편입학'으로 처리함.

2) 나이스 처리 방법

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중단 후 고등학교로 들어온 외국 국적 학생

이전 학교급(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중단 후 고등학교로 편입학 처리 방법은 '나. 학기 중에 들어온 경우 2) 나이스 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함.

나) 고등학교 중단 후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온 외국 국적 학생(재입학)

재입학 처리는 일반 재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

〈1단계〉 재입학생 등록하기



- ① ~ ② [학적]-[전입관리]-[전편재입/복학생등록]에서 '학년도(2022)', '과정(주간)', '계열(일반계)', '학년(1)' 확인 후 '기간(2022.03.01~2022.04.22)' 설정하여 {조회}함.
- ③ ~ ⑦ {등록}을 클릭하여 '전·편·재입/복학생 등록' 창에서 '변동구분(재입학)' 선택, {학생조회}로 '성명(PETER COOPER)' 입력('전·편·재입/복학생 기본사항'과 '이전학적'이 자동으로 입력됨), '전·편·재입/복학생 기본사항'의 '비고(학생 및 보호자 학습 희망)' 입력, '신규취득학적'(주간/야간(주간), '계열(일반계)', '학년(1)', '학과(7차일반)', '반(1)' 선택, '번호(35)'는 마지막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됨) 입력 및 확인 후 {저장}함.

 더 알아보기

- ⑤번 과정에서 {학생조회} 시 '재입생 학생찾기' 창에서 '성명' 입력 후 {학생찾기}로 검색함. 해당학생의 목록을 클릭한 후 {학생선택}하면 '전·편·재입/복학생 기본사항'과 '이전학적'이 자동으로 입력됨.

- 등록된 재입학생의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목록을 클릭 후 '전·편·재입/복학생 수정' 창에서 입력 내용을 수정하여 {저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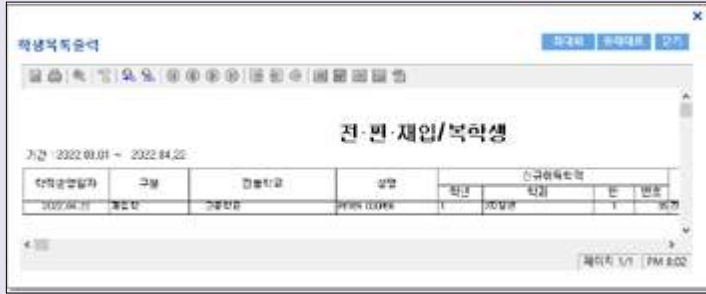
〈2단계〉 재입학생 학적 반영하기



- ① ~ ② [학적]-[전입관리]-[전입/편입/재입/복학생학적반영]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기간(2022.03.01~2022.04.22)' 설정하고, '미반영된자료' 선택하여 {조회}함.
- ③ 목록에서 '성명(PETER COOPER)'을 클릭하여 '학적반영 자료선택'에서 {기본학적}, {학생생활}, {성적},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내역}, {PAPS}, {국가학업성취도}, {학부서비스 신청내역}, {정정대장}, {학교스포츠클럽 누가기록}, {개별화교육계획}에서 입력된 자료를 확인한 후 {목록으로}를 클릭함.
- ④ {승인요청}을 클릭하여 '기안문서상신' 창에서 '제목(전입/편입/재입/복학)' 확인, {결재자지정}, '내용(외국 국적 학생(PETER COOPER)의 재입학 관련 학적자료입니다.)' 입력, 해당학생(PETER COOPER) 선택 후 {상신}하여 기안문 상신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학생(PETER COOPER)을 선택하여 {학적반영}함.

 더 알아보기

- {출력}으로 전·편·재입/복학생 목록을 출력할 수 있음.



- ③번 과정의 목록에서 '성명(PETER COOPER)'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남. '학적반영 자료선택 (최종수신일자)'에서 {기본학적}, {학생생활}, {성적},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내역}, {PAPS}, {국가학업성취도}, {학부모서비스 신청내역}, {정정대상}, {학교스포츠클럽 누가기록}, {개별화교육계획}에서 입력된 자료를 확인함.



- ④번 과정에서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 과정을 거쳐 결재가 완료되면 {수신자료내역보기} 옆에 학적반영을 할 수 있는 **학적반영** 버튼이 나타남.

다) 고등학교 중단 후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온 외국 국적 학생(편입학)

- 편입학 처리는 일반 재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
-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고등학교를 중단한 후, 자퇴 이전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는 '편입학(본교)', 다른 학교에 들어간 경우는 '편입학(타학교)'으로 등록하여 학적을 반영함.

<1단계-a> 편입학(본교) 등록하기



- ① ~ ② [학적]-[전입관리]-[전편재입/복학생등록]에서 '학년도(2022)', '과정(주간)', '계열(일반계)', '학년(2)' 확인 후 '기간(2022.03.01~2022.04.22)' 설정하여 {조회}함.
- ③ ~ ⑦ {등록}을 클릭하여 '전·편·재입/복학생 등록' 창에서 '변동구분(편입학(본교))' 선택, {학생조회}로 '성명(PETER COOPER)' 입력('전·편·재입/복학생 기본사항'과 '이전학적이 자동으로 입력됨), '전·편·재입/복학생 기본사항'의 '비고(학생 및 보호자 학습 희망)' 입력, '신규취득학적'(주간/야간(주간), '계열(일반계)', '학년(2)', '학과(7차일반)', '반(2)' 선택, '번호(32)'는 마지막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됨) 입력 및 확인 후 {저장}함.

(1단계-b) 편입학(타학교) 등록 및 자료 요청하기

■ 편입학(타학교) 등록하기



- ① ~ ② [학적]-[전입관리]-[전편재입/복학생등록]에서 '학년도(2022)', '과정(주간)', '계열(일반계)', '학년(2)' 확인 후 '기간(2022.03.01~2022.06.10)' 설정하여 {조회}함.
- ③ ~ ⑦ {등록}을 클릭하여 '전·편·재입/복학생 등록' 창에서 '변동구분(편입학(타학교))' 선택, {학생조회}로 '성명(GRACE ALICE)' 입력('전·편·재입/복학생 기본사항'과 '이전학적'이 자동으로 입력됨), '전·편·재입/복학생 기본사항'의 '비고(학생 및 보호자 학습 희망)' 입력, '신규취득학적(주간/야간(주간), '계열(일반계)', '학년(2)', '학과(7차일반)', '반(2)' 선택, '번호(33)'는 마지막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됨) 입력 및 확인 후 {저장}함.

 더 알아보기

- ⑤번 과정에서 {학생조회} 시 '학교명' 입력 후 {학교찾기}로 검색함. '성명' 입력 후에는 {학생찾기}로 검색하여 해당학생의 목록을 클릭한 후, {학생선택}하면 '전·편·재입/복학생 기본사항'과 '이전학적'이 자동으로 입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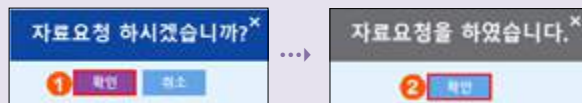
■ 편입학(타학교) 자료 요청하기



- ① ~ ② [학적]-[전입관리]-[전입/편입자료요청]에서 '학년도(2022)', '과정(주간)', '계열(일반계)', '학년(2)' 확인 후 '기간(2022.03.01~2022.06.10)' 설정하여 {조회}함.
- ③ ~ ④ 편입학(타학교) 대상 학생을 선택한 후 {자료요청}함.

 더 알아보기

- ④번 과정에서 {자료요청}하면 나타나는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창에서 {확인}을 클릭함.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창에서도 {확인}을 클릭함.



〈2단계〉 편입생(본교, 타학교) 학적 반영하기



- ① ~ ② [학적]-[전입관리]-[전입/편입/재입/복학생학적반영]에서 '학년도(2022)' 확인 후 '기간(2022.03.01 ~ 2022.06.10)' 설정하고, '미반영된자료' 선택하여 {조회}함.
- ③ ~ ⑤ 목록에서 '성명(GRACE ALICE)'을 클릭하여 '학적반영 자료선택'의 각종 항목({기본학적}, {학생생활}, {성적},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내역}, {PAPS}, {국가학업성취도}, {학부모서비스 신청내역}, {정정대장}, {학교스포츠클럽 누가기록}, {개별화교육계획})의 입력된 자료를 확인한 후 {목록으로}를 클릭함.
 ※ 상태는 반드시 '전입자료도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⑥ {승인요청}을 클릭하여 '기안문서상신' 창에서 '제목(전입/편입/재입/복학) 확인, {결재자지정}, '내용(외국 국적 학생(GRACE ALICE)의 편입학 관련 학적자료입니다.)' 입력, 해당학생(GRACE ALICE) 선택 후 {상신}하여 기안문서상신 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학생(GRACE ALICE)을 선택하여 {학적반영}함.

더 알아보기

- 편입학(타학교)하는 학교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은 원학교에서는 [학적]-[전출관리]-[전출자료요청접수및승부]에서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를 다음 과정을 거쳐 전출자료를 나이스로 전송함.

전출 자료전송을 하시겠습니까?
전출 시에는 학생부(반영) 이수시간과
학생생활(누가기록) 이수시간 및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을 비교합니다.

6 확인 취소

자료를 전송하였습니다.

7 확인



- ① ~ ② '학년도(2022)', '과정(전체)' 확인 후 '기간(2022.03.01~2022.06.10)' 설정하여 {조회}함.
- ③ ~ ⑤ 목록에서 '상태(전출자료요청의뢰)'와 '전송상태(전송대기)'를 확인 후 해당학생의 성명을 클릭하여 '접수내역'과 '이전학적'을 확인함. '학적반영 자료선택'에서 {기본학적}, {학생생활}, {성적},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내역}, {PAPS}, {국가학업성취도}, {학부모서비스 신청내역}, {정정대상}, {학교스포츠클럽 누가기록}, {개별화 교육계획}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전송할 자료를 체크하여 {③전출자료보내기}함. 이때 자료 요청교(타학교)에 전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유의사항'란에 입력함.
- ⑥ ~ ⑧ 자료 전송시 [학생생활]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누가기록 이수시간과 [학생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이수시간을 검증(동아리활동 특기사항 포함)한 후 이상 없으면 편입학하는 타학교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를 전송하고 {목록으로}를 클릭함.
- ⑨ 목록에서 '상태'와 '전송상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것을 확인함.

구분	편입학교에서 자료전송 요청 시	편입학교로 자료전송 후
상태	전출자료요청의뢰	전출자료전송
전송상태	전송대기	전송완료

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국내 고등학교 중단 후 다시 고등학교로 입급하는 외국 국적 학생
 - 중국에서 우리나라 중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 ○학년 졸업 후 중국 ○○○○학교(우리나라 고등학교급) 재학
 - 국내 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학 → 본국 귀국으로 인해 3학년 재학 중 학업 중단 → 중단 이전의 국내 같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M○○○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3○○○○-7○○○○○ 주소 : ○○도 ○○시 ○○구 ○○길 10
학적사항	2020년 05월 20일 □□고등학교 제2학년 편입학(2021년 04월 13일 자퇴) 2022년 03월 22일 □□고등학교 제3학년 재입학
특기사항	20○○.○○.○○. 중국 중학교 졸업 20○○.○○.○○.-20○○.○○.○○. 중국 고등학교 재학 2021.04.13. 본국 귀국으로 인한 자퇴

- 미국에서 우리나라 중학교급에 해당하는 학교 ○학년 졸업 후 미국 ○○○○학교(우리나라 고등학교급) 재학 → 국내 고등학교 1학년에 편입학 → 본국 귀국으로 인해 1학년 재학 중 학업 중단 → 미국 ○○ High School 재학 → 중단 이전의 국내 같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J○○○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4○○○○-7○○○○○○ 주소 : ○○도 ○○시 ○○구 ○○로 32
학적사항	2020년 06월 10일 □□고등학교 제1학년 편입학(2021년 02월 17일 자퇴) 2022년 08월 26일 □□고등학교 제3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20○○.○○.○○. 미국 중학교 졸업 20○○.○○.○○.-20○○.○○.○○. 미국 고등학교 재학 2021.02.17. 본국 귀국으로 인한 자퇴

- 중국 ○○○○학교(우리나라 중학교급) 졸업 후 중국 ○○○○학교(우리나라 고등학교급) 재학 → 국내 고등학교에 1학년 편입학 이후 가정 사정으로 2학년 재학 중 학업 중단 → 중국에서 학업을 계속 하다가 국내 다른 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P○○○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4○○○○-7○○○○○○ 주소 : ○○도 ○○시 ○○구 ○○로 43
학적사항	2020년 11월 04일 ○○고등학교 제1학년 편입학(2021년 09월 14일 자퇴) 2022년 09월 06일 □□고등학교 제3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20○○.○○.○○. 중국 중학교 졸업 20○○.○○.○○.-20○○.○○.○○. 중국 고등학교 재학 2021.09.14. 가정 사정으로 자퇴

■ 국내 중학교 중단 후 고등학교로 입급하는 외국 국적 학생

- 국내 중학교 1학년 입학 → 본국 귀국으로 인해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학업 중단 → 필리핀에서 학업을 계속하다가 국내 고등학교 2학년으로 편입학한 경우

학생정보	성명 : R○○○ ○○ 성별 : 남 주민등록번호 : 05○○○○-7○○○○○○ 주소 : ○○도 ○○시 ○○구 ○○로 68
학적사항	2022년 09월 21일 △△고등학교 제2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4. 한국어학급⁹⁾에 학생을 위탁한 경우(위탁학생 관리)

- 지역 내 한국어학급이나 위탁형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에 학생을 위탁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탁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 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학생, 외국인학생 등이 정규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학급

가. 위탁학생 나이스 관리 개요

학적	출석일수	교과 성적	비교과 영역
위탁학생관리	인정	인정 ¹⁰⁾	인정
항목	내용		
학적사항	• 재학생과 동일하게 관리함.		
출결상황	•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의 출결 그대로 인정함. • 지정된 등교일은 재적교에서 출결처리 함.		
각종 비교과 영역	•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함.		
나이스	•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처리함.		

- 재학생과 동일하게 학적을 관리하며, 나이스에서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함.
- 학기 중에는 재학상태를 유지하고 학년말 진급 시 위탁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함.
- 위탁교육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 학생이 재적교에 개설된 한국어학급 활동에 참여한 경우 활동 내용과 특기사항 입력 여부는 재적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함.

■ 본 장의 나이스 메뉴는 중학교를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다음의 표를 참조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탁학생등록]	[위탁학생확인요청접수및자료전송]	[위탁학생확인요청접수및자료전송]
[위탁학생출결관리]	[위탁학생등록]	[위탁학생등록]
[위탁학생동아리활동관리]	[위탁학생타학교자료전송확인]	[위탁학생타학교자료전송확인]
[위탁학생관찰내용관리]	[위탁학생출결관리]	[위탁학생출결관리]
	[위탁학생창의적체험활동관리]	[위탁학생창의적체험활동관리]
	[위탁학생관찰내용관리]	[위탁학생관찰내용관리]
	[위탁학생성적등록]	[위탁학생성적등록]
	[위탁학생세부능력및특기사항등록]	[위탁학생세부능력및특기사항등록]
	[위탁학생자유학기활동관리]	
	[위탁학생생활통지표관리]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위탁학생관리]에서, 고등학교는 [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에서 위탁학생을 관리함.

10) 자세한 교과 성적 인정 범위는 '4) 위탁학생 교과 성적 입력'을 참조함.

나. 위탁학생 관리

1) 위탁학생 등록

[입력 예시]

- 대상: 2학년 2반 32번 DANIEL LEE
- 기간: 2022.04.18.-2022.08.12.
- 교육구분: 기타
- 위탁기관: 두드림학교
- 전공: 공란
- 비고¹¹⁾: 한국어 교육과정 수강

※ 한국어학급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경우 '교육구분'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택함.

- ①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등록]에서 '학년도(2022)', '학기(1)', '과정(주간)', '학년(2)', '반(2)' 확인 후 {조회}함.
- ② ~ ⑥ {등록}을 클릭하여 '학년도(2022)', '학기(1)', '과정(주간)', '학년(2)', '반(2)' 확인 후 {조회}함. 학생 리스트에서 '해당학생(DANIEL LEE)' 선택 후 '시작일자(2022.04.18)', '종료일자(2022.08.12)', '교육구분(기타)', '기관명(두드림학교)', '비고(한국어 교육과정 수강)' 입력 또는 선택하여 {저장}함.
※ '전공'은 공란으로 둬.

11) '비고'는 선택 입력 사항임.

2) 위탁학생 출결 관리

[입력 예시]

- 대상: 2학년 2반 32번 DANIEL LEE
- 기간: 2022.05.01.- 2022.05.31.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20	1			3									



- 1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출결관리]에서 '학년도(2022)', '과정(주간)', '학년(2)', '반(2)' 확인 후 {조회}함.
- 2~4 월 목록에서 '05월'과 학생 리스트에서 '해당학생(DANIEL LEE)' 선택 후 '수업일수(20)', '질병결석(1)', '질병지각(3)' 입력 후 {저장}함.



더 알아보기

- 월별 출결자료는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에서 익월에 송부하는 위탁학생의 학생 개인별 출결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 평가기간 등 지정된 등교일은 재적교에서 출결을 처리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응시한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별로 결석 처리함.
- 위탁학생의 출결상황은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출결관리]에서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으로 부터 월별로 송부된 출결자료를 입력하되, 해당 월에 재적교의 등교일이 있는 경우 재적교 출결자료와 합산하여 입력함.**
- 위탁학생은 위탁할 때까지 재적교 수업일수와 위탁 이후의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의 수업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함.
- **위탁학생의 수업일수는 재적교 수업일수와 다를 수 있음.**
- 위탁학생이 소속된 학급에서는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일일출결현황을 등록하고 마감하되, 월말에 다음 절차대로 위탁학생의 출결처리를 진행함.
 - ① [학적]-[출결관리]-[반별월출결마감관리]에서 해당 월 마감함.
 - ②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출결관리]에서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에서 송부한 해당 월의 출결 자료를 입력함.
- 위탁학생 출결자료를 등록한 후에 [학적]-[출결관리]-[반별월출결마감관리]에서 해당 월 마감취소를 하는 경우에도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출결관리]에서 등록된 해당 월의 위탁학생 출결자료는 삭제되지 않으므로 **위탁학생의 출결자료 수정은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출결관리]에서만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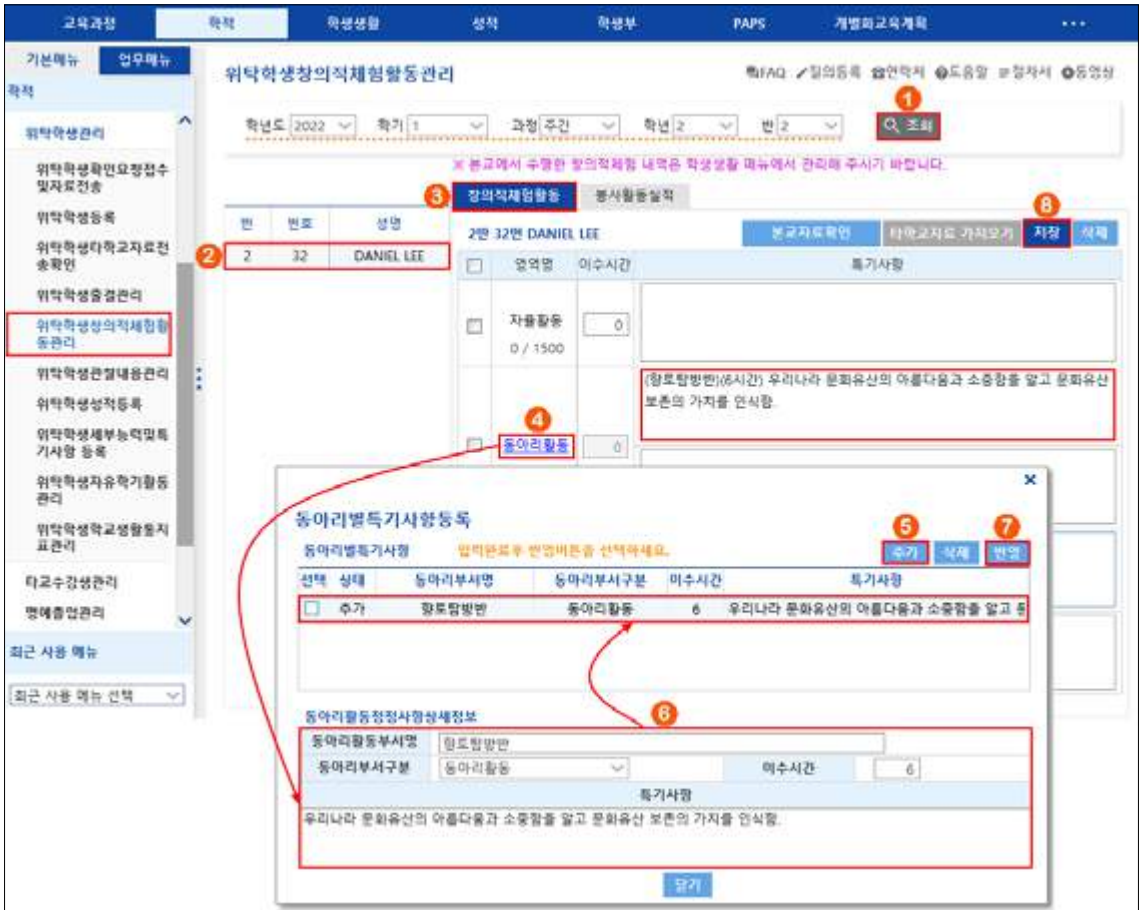
3) 위탁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등록¹²⁾

[입력 예시]

- 대상: 2학년 2반 32번 DANIEL LEE
- 기간: 2022.04.18.-2022.08.12.

동아리명			향토탐방반		
지도교사			박○○	인원	7명
차시	일자(요일)	시수	활동내용		
1	2022.04.22.(금)	2	오리엔테이션, 탐방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교육		
2	2022.05.20.(금)	2	우리고장 □□문화재 탐방		
3	2022.06.17.(금)	2	◇◇지역 문화체험활동		
이수시간 합계		6			
특기사항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고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인식함.			

12) 위탁교육기관에서 수행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입력 방법은 동일함. 여기서는 동아리활동 입력 방법을 안내함(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이수시간과 특기사항만 입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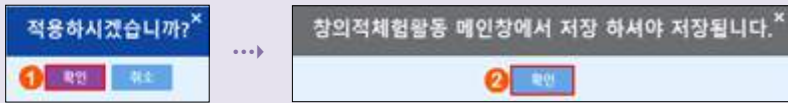


- ❶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창의적체험활동관리]에서 '학년도(2022)', '학기(1)', '과정(주간)', '학년(2)', '반(2)' 확인 후 {조회}함.
- ❷~❸ 학생 리스트에서 '학생(DANIEL LEE)'을 선택한 후 {창의적체험활동} 탭에서 '동아리활동'을 클릭하여 '동아리별특기사항등록' 창에서 {추가}를 클릭함.
- ❹~❺ '동아리활동정정상항상세정보' 항목에서 '동아리활동부서명(향토탐방반)', '동아리부서구분(동아리활동)', '이수시간(6)', '특기사항(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고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를 인식함)'을 입력하여 {반영}하고 {저장}함.



더 알아보기

- 동아리활동 부서명, 이수시간, 특기사항은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에서 학기말에 송부하는 위탁학생의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를 근거로 입력함(동아리활동 누가기록은 입력하지 않음).
-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한 동아리활동의 누가기록은 입력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부서명, 동아리 부서구분 유형, 이수시간, 특기사항을 입력함.
- '동아리별특기사항등록' 창에서 {반영} 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됨.



- {창의적체험활동} 탭에서 {저장} 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됨.



-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한 동아리활동 내용은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창의적체험활동관리]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기록(담임용)]의 {학생부자료} 탭에서 연동되어 조회됨.



- 학기 중에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일 이전의 재적교 동아리활동과 위탁일 이후의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의 동아리활동을 등록함.
- 동아리활동 이외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창의적체험활동관리]의 {창의적체험활동} 탭에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영역에서 입력하되, 이수시간과 특기사항만 입력함.
- 동아리활동 이외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 창의적체험활동관리]의 {봉사활동실적} 탭에서 입력함.



- {본교자료확인}으로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에서 입력한 자율활동·동아리활동·진로활동의 이수시간과 특기사항 및 진로활동 영역의 희망분야를 확인할 수 있음.

4) 위탁학생 교과 성적 입력

가) 초등학교

-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생의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입력함.
- 성취도는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받아 원적교의 학급담임교사가 입력함.

나) 중학교

-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의 성적을 인정함(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 학생성적등록]에서 입력하되,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문장으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 동일(유사)과목 이외 과목의 평가 내용은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입력하여 인정함.
- 유사과목의 인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함.
-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응시한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별로 결석 처리함.

다) 고등학교

-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의 성적을 인정함(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여 [학적]-[위탁·현장실습 학생관리]-[위탁학생성적등록]에서 입력하되,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문장으로 이수 내용을 입력함.
- 동일(유사)과목 이외 과목의 평가 내용은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입력하여 인정함.
- 유사과목의 인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학기말 성적처리 이전 복교 시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함.
-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응시한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별로 결석 처리함.
-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개별화 교육과정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음.

- 개별화 교육과정에 따른 신규 교과목은 교육부 승인 절차를 거쳐 나이스에 교과목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교과 성취도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음.
- 개별화 교육과정으로 수강한 과목은 “한국어학급에서 한국어학급 교육과정으로 수학함.”으로 입력할 수 있음.
 - 재적교 당해 학기에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관련 과목의 [성적]-[성적처리]-[과목별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입력함.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에서 송부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재적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 보통교과 중 동일(유사)과목은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세부능력및특기사항등록(중),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학생세부능력및특기사항등록(고)]에서 입력함.
-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통교과 과목의 평가 내용은 [성적]-[성적처리]-[개인별세부능력 및특기사항]에서 입력함.
- 학기 중 일부 기간만 위탁한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한국어학급(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평가 내용과 재적교의 평가 내용을 함께 입력 가능함.

V

외국 국적 학생 학적관리 관련 FAQ



▣ 제출 서류 관련

Q1.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 관리'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제2차 개정판, 2016.12.)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 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 관리(권장)]

- 목적: 국가예방접종을 미실시한 해외 전입 학생의 접종완료 여부 확인과 미접종자 추가접종 실시
- 담당
 - 학급담임교사
 - 해외 전입 학생 명단을 보건(담당)교사에게 통보
 - 보건(담당)교사
 - 해외 전입 학생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안내
 - 예방접종 확인 및 나이스(NEIS)에 결과 입력
- 예방접종 확인
 - 대상: 해외 전입 학생
 - 종류: 전입 시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예방접종
- 미접종 학생에 대한 접종
 - 권고 대상(7종): ① B형 간염 ② 폴리오 ③ A형간염 ④ MMR ⑤ 수두 ⑥ 일본뇌염 ⑦ Tdap/Td
 - 방법: 접종기관에서 「7-18세 청소년 예방접종 따라잡기 지침」에 따름.

▣ 취학, 편입학 등 학적처리 관련

Q2. 학생이 입교(입급) 시 사용되는 '입학', '취학', '편입학' 학적 용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학생이 처음 국내 초·중·고 1학년 입교(입급) 여부와 입교(입급)하는 시기 등에 따라 학적 용어가 다르게 사용됩니다.

'입학'은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으로 정의하며, 1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당해 학년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당해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1학년으로 처음 입급**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학적 용어입니다. 외국 국적 학생이 이 기간 동안 처음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합니다.

'취학'은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으로 정의하며,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외국 국적 학생이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입교(입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에 입교(입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합니다.

'편입학'은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으로 정의하며,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외국 국적 학생이 다음과 같은 학적변동인 경우에는 '편입학'으로 처리합니다(입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에 입교(입급)하는 경우 제외).

- 초·중학교에서 면제 후 면제 이전의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교(입급)하는 경우
- 고등학교에서 자퇴 후 자퇴 이전의 고등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교(입급)하거나 다른 고등학교로 다시 입교(입급)하는 경우

Q3. 미등록 이주아동 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 국적 학생이 학교에 입학, 취학(편입학)을 원한다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아동도 학교에 입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에 따라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로도 입급이 가능합니다.

Q4. 영주권(F5) 또는 국내 거소 자격을 가진 다문화학생 및 재외동포 자녀의 편입학 절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 영주권과 국내 거소 자격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학생의 편입학 절차는 외국 국적의 학생(중도입국 자녀 포함)의 편입학 절차와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 자녀는 편입학 관련 서류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대신 ‘국내거소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혜택(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를 갈음)을 원하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

Q5. 한국국적 다문화학생으로 영유아기 외국에서 생활하여 한국어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었으나 한국어학급이 있는 다른 학교로 입학할 희망합니다. 이 경우 한국어학급이 있는 학교로 입학이 가능하나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4항과 제75조제4항에 따라 다문화학생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경우는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학시키려는 학교에 신청하여 해당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 승낙한 학교장은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Q6. 복수국적 학생의 경우 외국 국적 학생의 학적처리 절차와 동일한가요?

- A. 복수국적은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학생은 대한민국 국적으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 학년결정 관련

Q7.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학교에 취학할 때 학년 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학생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 학업수행능력, 한국어의사소통능력, 나이, 정서적 상태 등 종합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학년을 배정합니다. **낮은 학년으로 배정을 하는 경우 가급적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외국학교(학력인정)의 학력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는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이수를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하고,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는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 설치된 학력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년을 정합니다.

Q8. 외국 국적 학생이 학년을 배정받아 재학 중인 상태에서 학부모가 학년 재배정을 요구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재학 중 학년을 재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초 학년 배정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진급을 통해 상위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합니다.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적능력에 관한 사항, 국내외 경시 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등 시도교육청별로 정하는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관련

Q9. 외국 국적 학생의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 A. 중국동포, 재한학교,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 국적 동포 중 희망자에 한하여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에 여권 상 영문성명과 함께 한글 성명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2019.4.11. 시행). 외국인등록증 등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10. 중도입국한 외국 국적 학생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이 되기 전에 취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①)와 학생이 취학 또는 편입학 당시에 사용했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기간연장이 되지 않은 경우(②) 나이스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 ①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의 외국 국적 학생(중도입국 학생 등)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방식은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 뒤의 7자리는 남자는 '3000000', 여자는 '4000000'로 입력하며,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는 '1000000', 여자는 '2000000'로 입력합니다. 동성 쌍둥이의 경우는 끝자리에 1, 2를 부여하여 관리합니다. 추후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면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외국인등록번호로 정정하면 됩니다.
- ②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이 만기되었으나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는 입력된 외국인등록번호를 그대로 두면 됩니다.

Q11. 외국 국적 학생이 3일 이상 질병결석을 하였으나 병원비 문제(의료보험 미가입)로 병원에 가지 않아 병원에서 발행한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출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 외국 국적 학생이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담임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고, 결석계에 관련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거 서류로 보관합니다.**

Q12. 외국 국적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 여권 만료로 인하여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자퇴'로 처리합니다.

Q13. 중도입국한 외국 국적 학생이 학기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본국의 성적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기간 동안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우리나라에서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학 또는 편입학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는 공란으로 둡니다.**

Q14. 이전학년도에 중도입국한 외국 국적 학생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명(초·중학교)/외국학교의 학교급(고등학교)과 수학기간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A. **그대로 둡니다.** 이전학년도에 기재된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명(초·중학교)/외국학교의 학교급(고등학교)과 수학기간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다만, 2022학년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외국학교명(초·중학교)/외국학교의 학교급(고등학교)과 수학기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Q15. 중도입국한 외국 국적 학생이 학교에 통보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미인정결석으로 인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장 직권으로 '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 국적 학생이 국내 초·중학교 등 의무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여 포기원(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즉시 '면제'로 처리합니다.

Q16. 외국 국적 학생이 2학기 초에 취학 또는 편입학하여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유급처리를 해야 하나요?

A. **외국 국적 학생이 일정한 학력 인정 절차를 거쳐 입학하려는 1학기까지 이수인정을 받아 취학·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취학 및 편입학 당시 해당 학년의 수학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출석일수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에 미달하여도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업일수는 '입급일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로, 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 진급처리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처리 대상자가 됩니다.

Q17. 외국 국적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외국 국적 학생이 재학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증빙서류(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음의 방법으로 정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절차는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성명 수정:** 학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증빙으로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정정함.
- **본인 성명 이외의 수정사항이 1학년에서 발생:**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직접 수정함.
- **본인 성명 이외의 수정사항이 2·3학년에서 발생:**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정정함.

VI 부록



[부록1] 학적처리 용어

1. **입학**: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 외국인 학생이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함.

2.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처음으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취학으로 처리함.
예) 외국 국적 학생이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에 들어오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함.

3. **재학**: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 고등학교의 장은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와 산업체 특별학급에서 1년 이상(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이후 편입학 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가 편입학 신청 시 해당 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 6. **전입학**: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 7. **복학**: 휴학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학교에 들어옴.
- 8.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 9. **조기진급**: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 10. **전출**: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전입 학교로 학적을 옮김.
- 11. **유급**: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함.
 - ①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 예) 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127.33...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함.
 - ② 유급대상자는 학년도말에 [학적]-[반편성선행작업]-[입학/조기진급/유급자관리]의 {유급자관리} 탭에서 등록하여 진급처리에서 제외함.
 - ※ 초등학교는 [학적]-[진급관리]-[유급자관리]에서 등록함.
 - ③ 유급으로 인하여 중복된 기간 동안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으로 삭제함(학년이력 · 인적 · 학적사항 ·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 원격수업일수(고)는 제외함).

- 12. **휴학**: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불가).
- 13.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 14.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어 학적에서 제외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불가).
- 15.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불가).

16.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7. **수료:**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18.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19.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20. **명예졸업:**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함.

- 명예졸업은 학교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학교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다.
- 명예졸업 업무 처리 절차
 - ① 심의 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② 심의 절차: 심의 신청(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나이스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부록2]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개요

1. 아포스티유 협약

- 가. 명칭: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나. 개요: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다. 발효시기: 1961. 10. 5. 헤이그에서 작성, 1965. 1. 24. 발효
- 라.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2007. 7. 14.
- 마. Apostille 발효 이후 절차: 공문서 발급→외교부/법무부확인→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2.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21. 9. 16 현재 120 개국 가입)

대륙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20)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일본,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52)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1)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31)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12)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스와질랜드,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중동(4)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스라엘

[출처] 아포스티유 홈페이지(www.apostille.go.kr)

[부록3] 외국 국적 학생 학적처리 관련 근거 법령

▣ 헌법

제6조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난민법

제33조(교육의 보장)

-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¹³⁾

제2조

-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13) 우리나라 발효일: 1991년 12월 20일(조약 제1072호)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헌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같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같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제82조(입학전형방법)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④ 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다문화학생은 제외한다)
- ② 제19조제1항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학생은 제81조제1항 및 제8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
 2.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다문화학생
 - 나.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3.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나.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학습경험이 있는 사람
-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등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 정도, 수학능력 및 나이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등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학습능력 평가 등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⑦ 이영에서규정한사항 외에 학력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대상·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력심의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학력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제9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PM 2022-17

2022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발행	2022년 4월
발행인	강대중 원장
발행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집필진	김태희(매홀초등학교), 이유숙(송전중학교), 정하정(안중고등학교)
협력관	차병준(교육부), 심나빈(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9층
전화	02-3780-9784
F A X	02-3780-9959
홈페이지	www.nile.or.kr(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edu4mc.or.kr(중앙다문화교육센터)
디자인/인쇄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